

발 간 등 록 번 호

11-1210000-000292-10

2008

# NETHERLANDS

## 네덜란드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NTS



국세청



발 간 등 록 번 호

11-1210000-000292-10

2008

NETHERLANDS

네덜란드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머 리 말

국세청은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현지국가의 조세제도와 행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책자」를 매년 발간하여 왔습니다.

올해에는 그 동안 세정간담회 등에서 우리 해외진출기업이 제기한 내용을 반영하여 「세정애로사항별 대처방안」을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우리 기업의 진출이 증가하여 현지 세무 정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아프리카 등 10개 국가에 대한 세무안내책자를 새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세무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08년 10월

국제조세관리관 강 성 태





# 목 차

|                                       |    |
|---------------------------------------|----|
| <b>I. 일반개황</b> .....                  | 1  |
| 1. 국가개요 .....                         | 3  |
| 가. 일반사항 .....                         | 3  |
| 나. 경제지표 .....                         | 3  |
| 다. 산업 및 교역 .....                      | 4  |
| 라. 한국과의 교역 .....                      | 4  |
| 2. 네덜란드 정치 제도 .....                   | 6  |
| <b>II. 투자환경</b> .....                 | 7  |
| 1. 투자환경 개요 .....                      | 9  |
| 가. 네덜란드의 경제특성 .....                   | 9  |
| 나. 네덜란드 비즈니스 환경 .....                 | 9  |
| 2. 외국기업 투자동향 .....                    | 11 |
| 가. 네덜란드 지역별, 업종별 투자개황 .....           | 11 |
| 나. 대네덜란드 투자 개요 .....                  | 11 |
| 다. 물류중심지로서의 외국기업 투자동향 .....           | 12 |
| 라. 제3국 우회투자 경유국으로 이용되는 네덜란드 .....     | 12 |
| 마. 최근 외국기업의 대 네덜란드 투자 동향 .....        | 13 |
| 바. 중서부 유럽 거점으로서 투자 매력은 여전 .....       | 13 |
| 3. 우리기업 투자동향 .....                    | 13 |
| 가. 우리기업의 투자진출 실적(도착 기준) .....         | 13 |
| 나. 우리기업의 대 네덜란드 업종별 투자진출 현황(도착기준) ... | 14 |
| 4. 투자관련 제도 등 .....                    | 14 |
| 가. 인센티브 개요 .....                      | 15 |



|   |           |
|---|-----------|
| 나. 투자관련 서비스기관: 네덜란드 투자진흥청 .....         | 15        |
| 5. 투자절차 .....                           | 15        |
| 가. 연락사무소(The Liaison Office) .....      | 16        |
| 나. 지사(The Branch Office) .....          | 16        |
| 다. 법인설립 (B.V.) .....                    | 17        |
| 6. 조세제도 .....                           | 18        |
| 가. 과세 통칙 .....                          | 18        |
| 나. 조세제도의 이점 .....                       | 19        |
| <b>Ⅲ. 법인세</b> .....                     | <b>21</b> |
| 1. 개요 .....                             | 23        |
| 2. 거주지 .....                            | 24        |
| 3. 법인세율 .....                           | 24        |
| 4. 과세표준 .....                           | 25        |
| 가. 감가상각 .....                           | 25        |
| 나. 재고자산의 평가 .....                       | 26        |
| 다. 양도소득 .....                           | 26        |
| 라. 이월결손 .....                           | 26        |
| 마. 투자비용공제 .....                         | 27        |
| 바. 에너지 공제 .....                         | 28        |
| 사. 연구개발 .....                           | 28        |
| 아. 자유상각 .....                           | 28        |
| 자. 교육비용 .....                           | 29        |
| 5. 법인세의 부과와 징수 .....                    | 29        |
| 6. 네덜란드 조세 통칙 .....                     | 30        |
| 가. APA (Advance Price Agreements) ..... | 30        |
| 나. ATR (Advance Tax Rulings) .....      | 31        |
| 다. 절차 .....                             | 31        |
| 7. 참여 면제 제도 .....                       | 31        |





|                                  |           |
|----------------------------------|-----------|
| 8. 네덜란드 자본세 폐지 .....             | 32        |
| 9. 원천세 .....                     | 33        |
| 가. 배당금 .....                     | 33        |
| 나. 이자 .....                      | 34        |
| 다. 기술 사용료 .....                  | 34        |
| 라. 기타 .....                      | 34        |
| 마. 조세협약 .....                    | 34        |
| <b>IV. 소득세 .....</b>             | <b>35</b> |
| 1. 과세대상자 .....                   | 37        |
| 2. 과세대상 소득 .....                 | 38        |
| 가. 사업에서의 이윤 또는 자유전문직에서의 소득 ..... | 38        |
| 나. 과거 또는 현재의 고용에서의 소득 .....      | 39        |
| 다. 기타 노동에서의 소득 .....             | 39        |
| 라. 투자소득과 주기적인 급여 .....           | 39        |
| 마. 부가급부 .....                    | 39        |
| 바. 이사의 보수 .....                  | 40        |
| 사. 퇴직연금 .....                    | 40        |
| 3. 면세소득 .....                    | 40        |
| 가. 일반 면세 항목 .....                | 40        |
| 나. 저축과 투자 .....                  | 41        |
| 다. 사업의 종결 .....                  | 41        |
| 4. 자본이득 .....                    | 42        |
| 5. 소득공제, 비용공제 그리고 세액공제 .....     | 42        |
| 가. 비용에 대한 공제 .....               | 42        |
| 나. 근로소득공제 .....                  | 43        |
| 다. 개인비용공제 .....                  | 44        |
| 라. 개인소득공제 .....                  | 45        |
| 6. 손 실 .....                     | 4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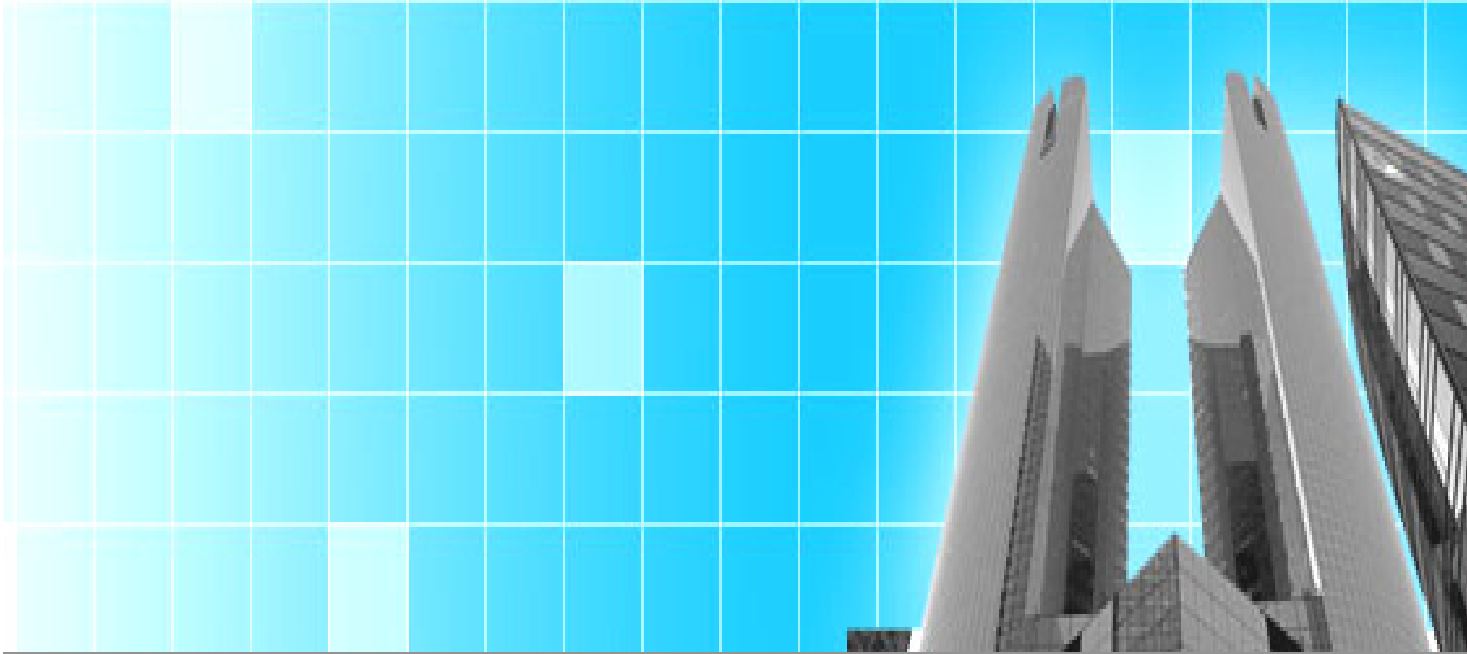


|                          |           |
|--------------------------|-----------|
| 7. 세 율 .....             | 45        |
| 8. 소득세 과세 .....          | 46        |
| 가. 선부과 .....             | 46        |
| 나. 원천징수세 .....           | 46        |
| 다. 확정부과 .....            | 47        |
| <br>                     |           |
| <b>V. 부가가치세 .....</b>    | <b>49</b> |
| 1. 개 요 .....             | 51        |
| 2. 세 율 .....             | 52        |
| 3. 국경 통과 구매 및 판매행위 ..... | 52        |
| 4. 부가가치세 관리 .....        | 53        |
| 가. 예외 사항 .....           | 53        |
| 나. ABC 공급 .....          | 54        |
| 다. 사내 공급 .....           | 55        |
| 라. 설치 .....              | 55        |
| 마. 운송 .....              | 55        |
| 바. 대리인 및 중개업자 .....      | 56        |
| 사. 신고 / 역내신고 .....       | 56        |
| 아. 벌금 .....              | 57        |
| 자. 소비세 .....             | 57        |
| 5. 유예제도 .....            | 57        |
| 6. 공급지 규정 .....          | 58        |
| 가. 공급지/ 재화와 용역의 취득 ..... | 58        |
| 나. 역부과 규정 .....          | 59        |
| <br>                     |           |
| <b>VI. 국제조세 .....</b>    | <b>61</b> |
| 1. 조세회피법칙 .....          | 63        |
| 2. 이전가격 .....            | 64        |



|   |           |
|---|-----------|
| 3. 과소자본 규정 .....                                | 64        |
| 4. 외국법인 지점의 과세 .....                            | 65        |
| 5. 외국 피지배 회사 .....                              | 65        |
| 6. 이중과세방지 .....                                 | 65        |
| 7. 네덜란드의 APA 신청 절차에 대하여 .....                   | 66        |
| 가. APA 제도 .....                                 | 66        |
| 나. APA의 신청 .....                                | 67        |
| 다. APA의 진행절차 .....                              | 68        |
| 라. APA 신청 실무 및 장점 .....                         | 68        |
| 8. 외국 근로자들을 위한 네덜란드의 30% Ruling (30% 비과세제도) ... | 69        |
| 가. 일반 사항 .....                                  | 69        |
| 나. 해외에서 입국 .....                                | 69        |
| 다. 네덜란드 급료 지불 명부에 등재 .....                      | 69        |
| 라. 특정 전문기술/희소성 .....                            | 70        |
| 마. 근로자 및 고용주 양자의 요청 .....                       | 70        |
| 바. 고용 계약서 .....                                 | 70        |
| 사. 최대 기간은 10년 .....                             | 70        |
| 9. 조세조약 .....                                   | 71        |
| 가. 2007년 현재 조세조약 체결현황 및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        | 71        |
| 나.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본문 .....                         | 72        |
| 다. 의 정 서 .....                                  | 89        |
| 라. 개정 의정서 .....                                 | 92        |
| <b>VII. 유관기관 연락처 .....</b>                      | <b>95</b> |





# I. 일반개황

1. 국가개요
2. 네덜란드 정치 제도





# I. 일반개황

## 1. 국가개요

### 가. 일반사항

- 국 명: 네덜란드 왕국(영문명: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현지어명: Koninkrijk der Nederlanden)
- 위 치: 유럽대륙의 북서부
  - 동쪽으로 독일, 남쪽으로 벨기에, 북·서쪽으로는 북해에 면하고 있음
- 면 적: 41,548km<sup>2</sup>
- 기 후: 온화 다습한 해양성 기후
- 수 도: 암스테르담, 행정수도는 헤이그
- 인 구: 16,404 천명(2008.3.31)
  - 암스테르담(75만), 헤이그(50만), 로테르담(60만), 트레흐트(25만)
- 민족(인종): 네덜란드족(게르만족 계통), 소수인종(모로코, 터키, 수리남)
- 언 어: 네덜란드어(공용어) / 영어, 독어, 불어(상용어)
- 종 교: 카톨릭(32%), 신교(25%), 기타(5%), 무교(38%)
- 건국(독립)일: 1558년
- 정부형태: 내각 책임제

### 나. 경제지표

- GDP: 5,598억유로(2007년)
- 2007년 경제성장률: 3.5%
- 구성: 서비스 50%, 제조업 36%, 공공부문 9%, 농업 3%

#### 4 ● 네덜란드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1인당 GDP: 약 34,000유로
- 노동력: 7.6백만명 (2008.3.31)
  - 상업서비스 40%, 비상업 서비스 32%, 산업 11%, 농업 3%, 기타 3%
- 화폐단위: Euro (2002년 1월부터 변경)
- 수출입
  - 2007년 (수출 402,227백만유로, 수입 358,690백만유로)

#### 다. 산업 및 교역

- 주요 교역 대상국 : EU(66.6%), 독일(22.3%), 벨기에/룩셈부르크(11.9%)
- 주요 교역 품목
  - 수입: 원유, 자동차료처리기기, 사무용기기 및 부품, 승용차, 의약품
  - 수출: 자동차료처리기기, 석유, 사무용기기 및 부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 산업구조
  - 운송, 물류, 금융 등 서비스 산업이 GDP의 59%를 점유(제조업 비중은 22% 수준)
  - 미국이 최대의 투자국 1,450억 달러(1,600여개 업체)
  - 2004년 이후 ABN Amro, Shell 등 IT 부문 아시아 인력활용

#### 라. 한국과의 교역

##### 1) 체결협정

- 1966.04.29: 특허 및 상표에 관한 각서 교환 (1966.4.29 발표)
- 1970.04.28: 사증면제협정 서명 (1970.6.1 발효)
- 1970.06.24: 항공협정 서명 (1970.12.30 발효)



- 1974.10.16: 투자보장협정 서명 (1975.6.1 발효)
- 1978.10.25: 이중과세방지 협정 서명 (1981.4.27 발효)
- 1979.02.28: 전대차관 협정 서명 (1981.6.24 발효)
- 1982.12.01: 경제기술협력협정 서명 (1983.8.1 발효)
- 1995.02.03: 해운협정 서명 (1995.12.1 발효)
- 2002.07.03: 사회보장협정 서명 (2002.10.1 발효)
- 2007.02.14: 세관협력협정 서명

## 2) 무역관계

- 한국의 수출: 2007년 4,489백만불 (전년대비 24.4% 증가)
  - 주요수출품: 건설중장비, 경유, 무선 전화기, 승용차, 컬러 TV, 유탄유, 타이어, 무선 통신기기 부품 등
- 한국의 수입: 2007년 3,703백만불 (전년동기대비 22.4% 증가)
  - 주요수입품: 반도체 제조장비, 고철, 집적회로반도체, 합성수지, 낙농품, 의료용기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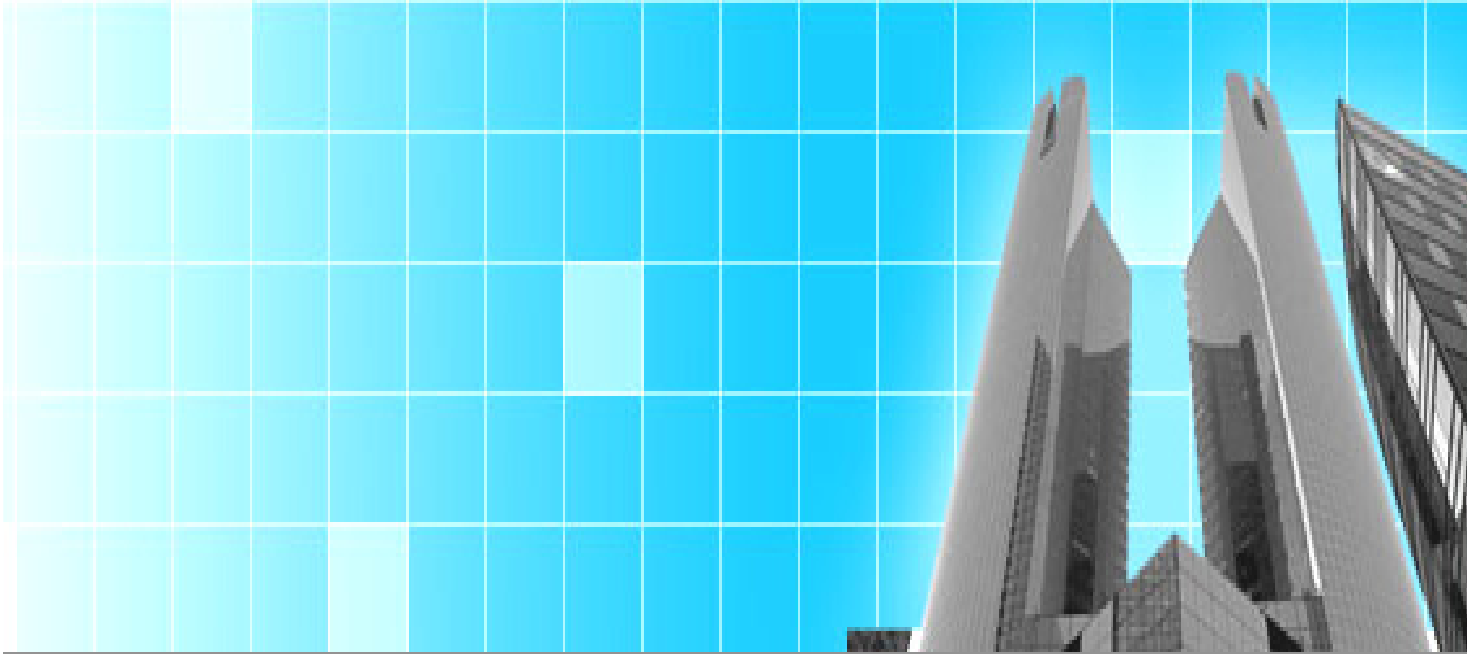
## 3) 투자관계

- 네덜란드의 대한 투자: 15,862백만불 (1962-2008년 4월 누계, 신고기준)
- 한국의 대 네덜란드 투자: 3,711백만불 (1968-2008년 3월 누계, 신고기준)

## 4) 교 민: 약 1,200명 (상사 주재원 포함)

## 2. 네덜란드 정치 제도

- 국 체: 입헌군주국
-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 기본적 정부기구: 국왕(Crown), 내각(Council of Ministers), 의회(States General), 국왕 최고자문위원회(Council of State) 및 사법부(Supreme Court)
- 국왕: 국가 원수로 세습제에 의하여 계승
  - 연정구성 협상조정자 및 수상 후보 지명자로서의 역할이 있으나 국사에 대한 권한은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것에 한정됨
- 내각: 국정 최고 의결기관이며 총리가 의장
  - 국정 전반에 관한 토의 및 의결 권한을 보유
  - 행정부는 14개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임소장관 및 국무상제도도 운용
- 의회: 상원(the First Chamber) 및 하원(the Second Chamber) 양원제



## Ⅱ. 투자환경

1. 투자환경 개요
2. 외국기업 투자동향
3. 우리기업 투자동향
4. 투자관련 제도 등
5. 투자절차
6. 조세제도



## II. 투자환경



### 1. 투자환경 개요

#### 가. 네덜란드의 경제특성

네덜란드는 EU 15개국 중 12위국으로 협소한 국토 면적(한반도의 1/5 수준)을 가지고 있음에도 세계 500대 기업 중 16개, 유럽 500대 기업 중 33개가 위치하고 있는 등 세계 10위권의 무역대국의 유럽의 Little Giant로 불리어지고 있다.

또한, 세계 최대 규모의 로테르담항을 보유하여 유럽 수입물량의 60%와 수출물량의 30%를 취급하는 등 유럽 물동량의 40%를 점유하므로써 유럽의 Gate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화훼의 경우는 첨단기술개발로 화훼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성공하여 연간 45억불을 수출하여 세계화훼시장의 60%를 공급하는 등 열악한 국토환경하에서 물류, 화훼, 금융 등 틈새산업을 육성 및 성장시켜 유럽의 경제발전 Model(일명 Polder Model)이 되고 있다.

#### 나. 네덜란드 비즈니스 환경

네덜란드는 반경 300마일(일일 생활권) 이내 1억7천만명의 인구와 유럽 주요 기업의 50%가 소재하고, 유럽의 3대 시장인 독일, 프랑스, 영국의 중간 지점에 위치여 독일 루르 공업지대를 포함한 유럽 주요공업지역과 수로 및 육로를 연결하는 지리적 중심지 및 양호한 접근성을 갖추고 있다.

사회간접자본의 경우, 62년 이후 물동량 면에서 부동의 세계1위인 로테르담항(Port of Rotterdam)을 보유하고 있어 연간 5백만개의 컨테이너와 3억1천만톤의 화물을 처리가 가능하고, 유럽공항 중 4위인 스키폴 공항은 물류, 운송, 보관 및 출하시설이 우수하여 해외 각 지역과의 화물연

결체계가 탁월하여 과거 20년간 Business Traveler International에 의해 “유럽에서 가장 우수한 공항”으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암스테르담의 항만 및 공항시설과 로테르담의 항만시설은 도로, 철도망, 내수로 등 내륙 운송수단을 통해 유럽 주요 시장들과 연결이 가능하고 도로는 총 연장 134,000km, 수로는 6,200km, 철로는 6,500km이며, 선박운행 가능 내수로는 5,000km, 이중 1,500톤 이상의 대형선박 운행가능 수로는 1,800km에 달한다.

네덜란드는 전통적인 무역국가로 무역 및 운송이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3만명 이상의 풀타임 근로자가 물류 관련 비즈니스에 근무하고, 160여개의 물류 전문서비스 업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물류관련 협회 및 기관, 대학 등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학위 및 물류 실무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세관시스템은 EU 공통의 관세법을 적용 받지만 운용면에서는 EU 국가별로 관세법 집행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네덜란드는 세관 통관절차가 간편하고 융통성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물류 반입일자에 따라 부가세나 또는 통관세 없이 다른 유럽국가로의 물류수송이 가능하며, 보세 창고의 허가도 매우 신축적이다.

마지막으로, 네덜란드 국민은 남녀노소 및 직업 구분 없이 대부분이 영어를 구사하며, 영어 이외에 독어, 불어 등 기타 외국어 구사도 우수하다. 이에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유연한 노동시장을 자랑하고 있으며 단기 및 파트타임 계약 등 탄력적인 고용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파업 등 분규로 인한 인력 손실도 적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네덜란드는 유럽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높고, 평균 근로시간이 적은 편이며, 근로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우선시하는 법령과 문화 때문에 종업원 결근이 많고, 정규직해고 시에는 노동사무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네덜란드 정부는 공공부문 및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근로자와 정부, 근로자와 기업간 크고 작은 마찰이 이어지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 2. 외국기업 투자동향

### 가. 네덜란드 지역별, 업종별 투자개황

네덜란드는 우리나라 면적의 1/5에 해당하는 면적을 가진 작은 국가이며, 전국이 고루 발달하여 로테르담 항만지역 또는 암스테르담 공항지역(스키폴 국제공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이 유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특색에 따라 외국기업의 업종별, 지역별 투자도 뚜렷한 특징을 보이지 않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도 내외국기업간의 비차별적 대우는 물론 지역별, 업종별 투자유치환경을 특성화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별도의 통계나 자료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외국기업의 자국화 진전, 자국기업의 외국자본 침투로 내외국기업간 경계가 없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국가별 자본 이동에 의거한 통계수치에 따르면, 금액기준 최대 투자국은 미국이며, 독일과 영국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산업별로는 고용창출규모를 기준으로 ICT(13%의 고용점유), 물류(12%), 비즈니스서비스(10%) 등으로서 IT와 서비스가 외국기업투자의 대중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나. 대네덜란드 투자 개요

유럽 단일시장 도입 이후 네덜란드는 외국기업들의 유럽물류센터(EDC, European Distribution Center) 및 유럽지역본부(European Headquarter) 입지로 주목되어 왔다. 네덜란드의 발달된 금융 시스템 및 유리한 세제시스템으로 다국적 기업의 지주회사 및 금융센터가 다수 설립되어 왔다. 이로 인해 세계적 기업의 제3국 우회투자기지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지리적 이점 및 발달된 투자환경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의 투자유치 실적은 감소세이며, 이는 다국적기업들이 동구 및 중국지역 등으로 투자거점을 분산하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물류중심지로서의 외국기업 투자동향

네덜란드 국제물류협회(HIDC, Holland International Distribution Center)가 주장하는 네덜란드 물류업지의 강점은, ①우수한 인프라, ②좋은 기업환경, ③발달된 물류서비스, ④친기업적인 정부 등을 들고 있다.

HIDC의 자체 통계에 의하면, 유럽에서 5개국 이상을 관장하는 EDC(유럽물류센터) 점유율을 유럽국가간에 비교한 결과, 네덜란드 51%, 벨기에 18%, 독일 11%, 프랑스 8%, 영국 8%, 기타 4%로 나타났다. 유럽 물류센터의 50%이상이 네덜란드에 설치되어 있음을 뜻한다.

## 라. 제3국 우회투자 경유국으로 이용되는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발달된 금융시스템 및 유리한 세제시스템으로 다국적 기업의 지주 회사 및 금융센터의 기능을 하는 기업도 많이 설립되어 왔다. 이는 네덜란드 기업이 아닌 외국기업이 제3국에 투자할 때 네덜란드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 한 후 이를 통해 제3국에 투자하는 경우이다. 네덜란드 기업 명의로 한국에 투자하는 사례 중 필립스, ING 등 네덜란드 토종 기업의 대한투자를 제외하면 상당 부분이 이와 같은 제3국 기업의 네덜란드 우회 투자이다.

외국투자기업이 네덜란드를 이용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관대한 과세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는 기업이 발생시킨 이윤에 대해서는 1회 부과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주주의 주식처분으로 실현된 자본소득이나 배당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며, 네덜란드기업이 외국으로 지불하는 이자와 로열티 그리고 외국기업이 네덜란드 기업에 지불하는 이자와 로열티 등에도 낮은 세율을 적용 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그간 조세 피난처로 알려져 있던 케이먼 군도 등 카리브 연안지역에 버금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절세가능 국가로 절세를 목적으로 외국기업이 설립한 일명 '페이퍼 컴퍼니'수가 2006년 기준 약 1,700여 개로 세계 유수의 다국적 기업 1,200여 개도 절세를 목적으로 네덜란드에 지주회사(Holding company)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지주회사들은 네덜란드 내 투자뿐만 아니라 제3국 우회투자를 목적으로 한 경우도 많다.



**마. 최근 외국기업의 대 네덜란드 투자 동향**

네덜란드 투자유치 강점분야로는 소프트웨어,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등이며, 동 부문은 여전히 유럽 경쟁국에 비해 높은 FDI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제약 등 여타부문은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전체적으로 다국적기업의 관심이 동구권 및 중국 등 제3국 신흥 시장으로 이전되면서 상대적으로 네덜란드의 투자유치환경 및 경쟁력이 저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네덜란드에 투자한 외국기업 수는 2006년 기준 5,380개로 집계되어 2005년도에 비해 1.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외국기업을 통한 고용창출 규모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바. 중서부 유럽 거점으로서 투자 매력은 여전**

네덜란드 투자유치 강점분야로는 IT, BT, 화학,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부품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산업은 네덜란드 본토 기업들의 활동이 왕성하거나 물류 허브로서의 이점을 이용할 수 있는 분야들로서 유럽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FDI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이 동구 및 러시아시장을 겨냥한 동유럽 물류거점을 별도로 설립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네덜란드에 대한 투자여력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중서부 유럽의 물류 중심지로서 네덜란드의 매력은 여전히 높은 편으로서 한국의 중견, 중소기업들의 네덜란드 투자도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3. 우리기업 투자동향**

**가. 우리기업의 투자진출 실적(도착 기준)**

한국의 대 네덜란드 투자실적(신고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건, 백만 불)

| 2006 |     | 2007 |     | 2008(1-3) |    | 누계(1968-2008.3) |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29   | 241 | 29   | 686 | 8         | 81 | 225             | 3,711 |

\*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지역별 해외투자현황 통계, 2008년 5월 현재 최신 통계자료

### 나. 우리기업의 대 네덜란드 업종별 투자진출 현황(도착기준)

한국의 대 네덜란드 업종별 투자진출 현황(신고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건, 백만 불)

| 산업별                | 2008(1-3) |       | 누계(1968-2008.3) |         |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총계                 | 8         | 81.0  | 225             | 3,711.0 |
| 광업                 | 1         | 0.027 | 19              | 208.0   |
| 제조업                | -         | -     | 64              | 2,437.0 |
| 건설업                | 2         | 38    | 3               | 38.0    |
| 도매및소매업             | -         | -     | 86              | 464.0   |
| 숙박및음식점업            | -         | -     | 2               | 0.1     |
| 운수업                | 1         | 6     | 14              | 14.8    |
| 통신업                | -         | -     | 1               | 151.0   |
| 금융및보험업             | 1         | 13    | 4               | 36.0    |
| 부동산및임대업            | -         | -     | 4               | 24.0    |
| 사업서비스업             | 3         | 24    | 20              | 277.0   |
| 보건및사회복지사업          | -         | -     | 1               | 1.0     |
|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 -         | -     | 1               | 60.0    |
|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 -         | -     | 6               | 0.5     |

\*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지역별 해외투자현황 통계 2008년 5월 현재 최신 통계자료

## 4. 투자관련 제도 등

네덜란드에는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나 금지, 제한규정이 없다. 내국인과 외국인 동일대우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별도의 외국투자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도 없으며, 내외국인 동일대우 원칙에 의거 법인세를 점진적으로 낮추고 있다. 내외국기업 구분 없이 기업유치를 위한 몇 가지의 인센티브 제도는 운영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법령을 통해 투자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으며 특정 요건만 갖출 경우 외국인의 현지지점 설치, 법인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단, 네덜란드가 정책적으로 육성코자 하는 물류서비스, 농업 등 네덜란드 고유의

강점분야에는 로테르담 항만청 등 부문별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한 투자유치 활동이 왕성하며, 1:1 협상에 의거 외국기업 유치에 매진하고 있다.

### 가. 인센티브 개요

네덜란드 정부에서 제공하는 외국법인만을 위한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으며 네덜란드 내에서의 지역이전에 대해서만 제공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혜택은 네덜란드 내 설립된 법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많은 외국투자기업들이 매력을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와 같이 금융혜택 등의 직접적인 인센티브보다 네덜란드 세무당국의 법인세 관련 편의제도 때문이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 법인이 해외에 설립한 지사와의 특수거래관계에 대한 법인세율 사전 확정 제도 등은 다국적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복잡한 세무관계를 사전에 고정된 비율로 확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경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많은 기업들이 네덜란드를 해외진출 거점으로 삼는 중요한 결정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나. 투자관련 서비스기관: 네덜란드 투자진흥청

네덜란드 투자진출 관련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법령, 제도 관련 문의 시 답변을 한다. 특히 서울주재 네덜란드 대사관내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 한국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NFIA는 네덜란드 투자기관인 EVD와 2008년 상반기 중 법령에 의해 통합될 예정이며 EVD가 해외 수출과 투자유치 업무 모두를 총괄하게 될 예정이다. 한국 등 해외 지부는 EVD지사로 바뀌게 되며 KOTRA와 같이 수출 진흥과 투자 유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5. 투자절차

네덜란드의 외국 기업진출 형태는 ① 연락사무소, ② 지사, ③ 법인 설립 등으로 나누어지며, 법인설립은 다시 유한회사(B.V.)와 주식회사(N.V)로 나뉘어진다.

설립형태는 외국기업과 내국기업이 자격조건이나 설립요건이 동일하며 외국기업도 내국기업과 같은 방법에 따라 현지법률에 따라 회사설립 등기

를 한다. 등기 후에는 ‘외투기업’ 등 별도의 법적지위 없이 국내기업으로 간주된다. 진출 분야도 중앙은행 및 공용방송사업 외에 업종별 제한은 없다.

네덜란드는 제조업, 서비스업을 막론하고 모든 분야에서 외국인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단 국가 중앙은행(한국은행에 해당)과 네덜란드 국영 공용방송(TV, 라디오)에 대한 외국기업의 지분참여 및 유사형태 기관 설립은 금지되어 있으나 은행, 방송업도 상업적 목적하에서는 설립이 허용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제한 및 금지업종은 없다고 볼 수 있다.

### 가. 연락사무소(The Liaison Office)

연락사무소는 현지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므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득을 창출할 수도 없으며, 시장정보 수집 또는 국내 연락망으로서 활동한다. 연락사무소는 현지 상공회의소에 등록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사무실 운영의 필요에 의거 상공회의소에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등록을 해야만 회사명의로 은행구좌 개설, 전화설치 및 자동차임대, 직원 채용 등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연락사무소는 소득을 창출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 납부의무는 없으나 대표자는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은 물론, 근로허가 및 거주허가는 받아야 하며, 직원 채용 시 일반적인 현지 노동법규의 적용을 받게 된다. 연락사무소를 상공회의소에 등록하는 절차는 ‘지사’ 설립의 경우와 동일하다.

### 나. 지사(The Branch Office)

지사는 현지의 독립법인체가 아닌 모기업의 일부인 지점으로서, 사업을 영위한다는 점에서는 B.V.라고 하는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법인과 차이가 없으나, 상공회의소에 등록은 하여야 한다. 지사설립에는 아래와 같이 회사등록증 발급을 위한 상공회의소 등록절차와 세무번호 발급을 위한 국세청 등록 등 2가지의 등록 절차가 있다.

네덜란드 진출 초기에는 지사설립이 법인설립보다 간소하고 신속하게 설립할 수 있으며, 비밀 유지가 용이하나, 지사가 수행한 법적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클레임에 대해 모기업(본사)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점에서, 자

본금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B.V.(유한책임회사) 또는 N.V.(주식회사)와 다르다. 이 점에서 외국기업들은 지사보다는 유한책임회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 다. 법인설립 (B.V.)

네덜란드에서의 법인은 유한책임회사(B.V.)와 주식회사(N.V.)의 두 가지가 있으나, 규모가 크지 않으며, 증시상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 통상 B.V. 형태의 법인을 설립한다. 유한책임회사는 주식공모를 할 수 없으며 주식양도는 제한되어 있다. 지사 설립 시에는 공증인이나 일반인 여부에 관계없이 지사설립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현지법인 설립에는 공증인이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먼저 법인설립 받기인이 네덜란드의 공증인(Dutch Public Notary)으로 그를 지명한다. 공증인으로 법무법인 지명도 가능하다. 공증인의 법인설립 대행에 따른 수수료는 약 3,000유로가 소요된다. 공증인은 법인설립 받기인으로부터 각종 서류를 제출 받아, 네덜란드 법무부에 “이의없음 확인서”를 발급한다. 법무부 승인에는 약 8주가 소요되나, 법무부 승인 이전이라도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성공회의소에 “설립절차 중인 유한책임회사 - B.V. i.o.”로 등록하면 된다(i.o.는 설립절차가 진행 중임을 의미함)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공증인에 대한 위임장, 설립자 및 이사의 각종 은행증명서, 설립자의 대차대조표, 법인설립 정관, 설립자의 법인설립 정관, 설립자의 관리책임자에 대한 권한위임장(공증) 등이 있으며, 주식발행 및 납입자본금이 최소한 18,000유로 이상이어야 하고(주식회사는 45,000유로) 동 법인자본금 보유 및 투자내역 증명은 은행잔고, 사무실비품구입, 차량구입 내역 등을 합한 자본금의 총액을 의미한다.

현지법인은 현지법인이 수행한 법적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클레임에 대해 자본금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지만 지사설립의 경우보다 준비해야 할 서류와 비용이 많이 든다.

## 6. 조세제도

네덜란드는 수세기에 걸친 무역 국가이다. 이러한 오랜 전통을 확실히 유지하기 위하여 네덜란드 정부는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고 네덜란드에 대한 해외투자를 촉진시키는 경쟁력있는 조세 제도를 확립해왔다. 법인세율은 유럽 이웃 국가들과 균형을 이루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 기업들이 네덜란드에 진출하여 조직을 구축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하는 수많은 특징들이 있다.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과 비교하면 네덜란드는 광범위한 조세 협정 네트워크를 토대로 구축된 아주 경쟁력있는 조세환경, 보세 창고 제도, 기업의 장래의 납세 의무를 정하는 소위 사전과세통칙제도 등이 유명하다.

네덜란드의 주요 조세는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원천징수근로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이다.

### 가. 과세 통칙

과세는 국제적인 그룹들이 사업체 설립 장소를 선택하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네덜란드 세무 당국은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으며, 따라서 가능한 한 개방적이고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사전에 미리 확실성을 제공하는 문제에 관한 한 경쟁력 있는 위치를 점하고 있다.

네덜란드 조세 제도의 여러 가지 특징 가운데 하나는 특정활동이나 거래에 대한 과세처분 문제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요청할 경우, 재무부 또는 해당 조사기관이 대개의 경우 기꺼이 예상 거래의 세금 효과에 대한 협의에 응한다. 그 결과 서면 사전 과세 통칙으로까지 연결되는 경우, 해당 과세 조사기관은 관련 사실들이 정당하게 제시되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의견을 준수한다.

다국적 기업들은 신속성과 함께 사전에 확실성 확보 여부를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분야에서 감지되는 신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재무부 장관은 과세 통칙 결정에 필요한 시간을 원칙적으로 최대 8주로 줄이는 조치를 취하였다.

네덜란드가 전세계 80개 이상의 국가들과 협정을 체결했다는 사실은 네덜란드가 국제적이며 쌍무적인 상거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협정들은 기업들이 강제적으로 이중 과세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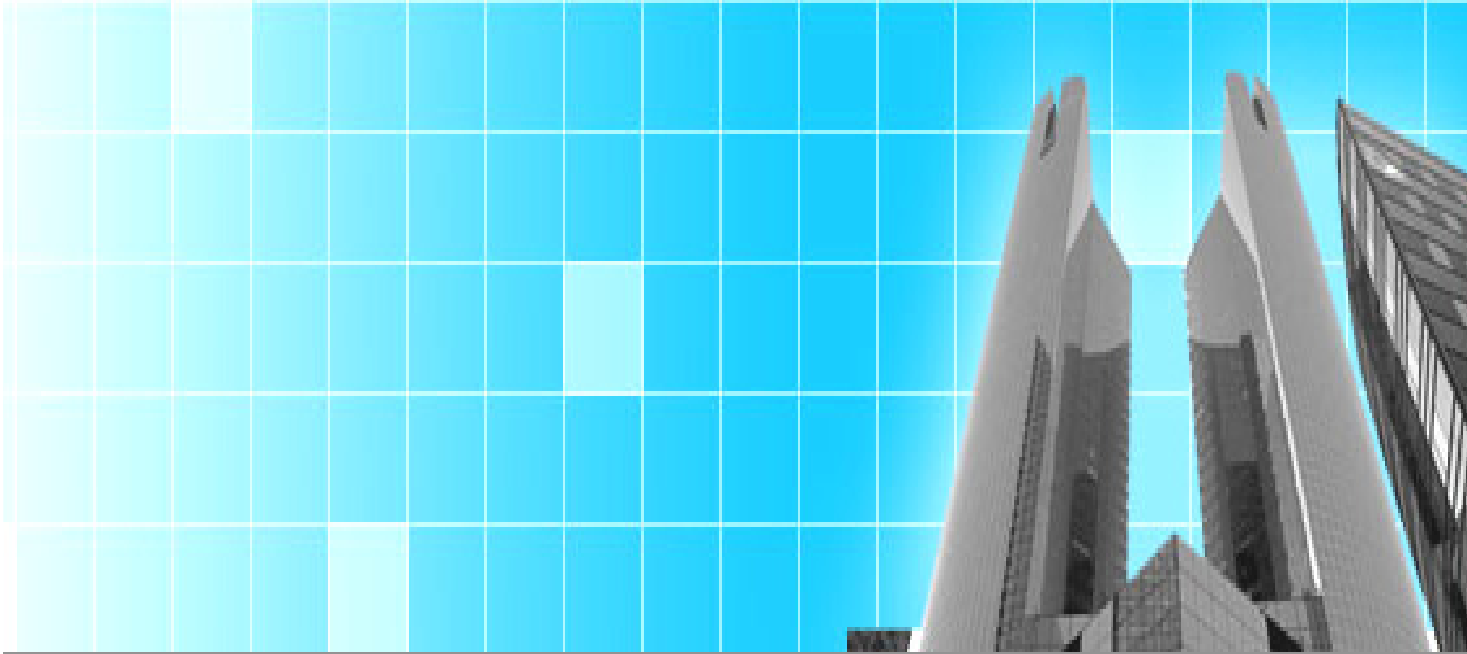
### 나. 조세제도의 이점

네덜란드 조세제도에는 아래와 같이 국제적으로 조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유리한 특징들이 있다.

- 배당금, 이자 및 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줄일 수 있는 광범위한 조세 협정 네트워크(이자 및 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0%까지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기본적으로 네덜란드가 이자나 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다)
- 조세협정이 없는 경우 이중과세 방지에 관한 법령을 통해 이중과세 경감
- 해외로 송금하는 이자와 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비과세
- 네덜란드는 유럽연합 회원국이기 때문에 유럽공동체가 시행하거나 향후 제정할 각종 지침, 관계회사간에 이루어지는 이자와 로열티에 관한 지침 및 유럽합병지침 등의 혜택을 향유하는 것을 보장
- 종합 법인 소득세율 25.5%
- 현금 배당, 현물 배당, 무상주식, 은닉 이익 처분액, 자본 이득 등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춘 지분 보유와 관련된 모든 혜택에 대해 네덜란드 법인세가 면제되도록 하는 주식 배당금에 대한 세금 면제
- 한 회사의 손실을 다른 회사의 이익으로 상계처리 할 수 있는 커다란 특징과 함께, 결합 세금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동일 그룹내의 여러 회사의 세금 결합이 유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회계 결합 제도
- 그룹 재무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 5%의 유효 세율을 적용 받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그룹 이자 박스 제도의 도입(유럽위원회 승인 조건)
- 자체 개발한 무형자산에 대해 취득한 특허와 관련된 수입에 대해 10%의 유효세율을 적용받게 하는 특허 박스 제도의 도입

- 손실을 9년동안 차기 이월시키고 손실을 1년 동안 전기 이월 시킬 수 있는 제도
- 미래의 거래, 투자 또는 법인 구조와 관련하여 사전에 미리 확실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네덜란드 과세 통칙 제정 제도
- OECD의 조세협정모델 및 OECD의 이전가격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사내 가격 책정에 대해 소위 제3자 거래가격 원칙에 입각한 이전가격책정 지침
- 특정한 종류의 프로젝트에 대한 세금 혜택
- 총 투자액 가운데 일정 비율에 따른 금액을 과세표준 산출시 공제할 수 있도록하는 에너지 투자 공제 제도
- 선박회사들에게 유리한 톤 세제
-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해외로부터 선임하였을 경우, 그리고 해당 근로자가 네덜란드 노동시장에 별로 없는 특별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경우, 그 직원의 급여 중 30%를 면세 환급해주는 30% 면세 규정
-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연구개발 공제 및 근로세 공제 제도





## Ⅲ. 법인세

1. 개 요
2. 거주지
3. 법인세율
4. 과세표준
5. 법인세의 부과와 징수
6. 네덜란드 조세 통칙
7. 참여 면제 제도
8. 네덜란드 자본세 폐지
9. 원천세





## III. 법인세

### 1. 개 요

법인세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 법인 모두에게 부과된다. 거주자 법인은 전세계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이중 과세는 주식 배당에 대한 세금면제, 조세협정 또는 이중 과세 방지령에 의해 피할 수 있다. 비거주자 기업, 주로 네덜란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의 지점, 사무소는 네덜란드에 있는 소득원에서 창출되는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네덜란드 법인세법에서는 자본이득과 다른 이득을 구분하지 않는다. 이익은 원칙적으로 실현되는 연도의 과세대상 소득에 속하는 반면에, 비용은 발생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다. 연간 과세대상 소득은 '건전한 상관례'에 따라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건전한 상관례라는 개념은 법에 명기되어 있지 않으며 주로 판례법에서 발전된 것으로 조세 목적상 일정한 조정과 함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다.

과세대상 소득 계산 원칙의 변경은 그것이 건전한 상관례에 부합되고 세금혜택을 얻기 위하여 행해지는 것이 아닌 경우에 허용된다. 이러한 세법 규정 때문에 네덜란드 세무당국은 과세대상 이익 계산에 있어 실용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손익 인식 시점, 회사내 이전가격 책정, 회사내 비용배분 조치 등과 같이 과세대상 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방법의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세무조사기관과 사전 합의 내용을 협상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그 결과, '건전한 상관례'에 부합되는 한 적합한 제도를 채택하는데 있어 자유가 생기게 된다. 국제적인 거래 증가에 따라 네덜란드는 '건전한 상관례' 정신에 부합하는 법률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이전가격 산정규정을 세법에 도입해 넣었다.

## 2. 거주지

네덜란드 세법은 "거주"에 대한 정의가 없다. 회사거주지에 대해선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데 회사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위치로 한다. 네덜란드법에 근거하여 법인으로 간주되는 실체(기업)는 법인세와 배당원천세를 부과하기 위해 네덜란드 거주자인 법인으로 간주된다.

## 3. 법인세율

2007.1.1일부로 법인세율은 과세대상 소득 가운데 최초의 25,000유로에 대해서는 20%, 25,000유로에서 60,000유로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23.5%, 그리고 60,000유로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5.5%로 인하되었다.

〈네덜란드 법인세율〉

|            |           |           |           |
|------------|-----------|-----------|-----------|
| 2007년 ~ 현재 | ~ €25,000 | ~ €60,000 | €60,000 ~ |
|            | 20%       | 23.5%     | 25.5%     |
| 2006년 이전   | ~ €22,689 | €22,689 ~ |           |
|            | 22.5%     | 29.6%     |           |

특히, 2007년부터 IT/IP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로얄 박스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특허 소득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특허 건별) 10% 정액율로 과세한다는 것이다. 단, 특허 개발비의 4배를 초과하는 이익은 표준 법인세율로 과세된다.

또한, 새로운 그룹 이자 박스 (Group Interest Box) 제도도 도입되었는데 그룹내부에서 이자 수입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5% 정액률로 과세할 수 있다. 그룹 이자 박스에 대한 과세 기준은 그룹 내부의 외상매출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 수입에서 그룹 내부의 외상매입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출 이자를 공제한 것으로 구성된다. 그룹 이자 박스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그룹사 자격 요건을 갖추려면 기업간 지분 관계가 50% 이상이어야 한다. 그룹 이자 박스에 소속된 과세 대상자로 할 것인지

의 선택은 모든 네덜란드 거주 그룹사들이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취소는 최소한 3년이 경과하여야만 가능하다.

네덜란드 정부는 그룹 이자 박스와 로열티 박스 제도가 향후 유럽연합 법률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 두 가지 제도에 대한 유럽연합의 승인을 요청해놓고 있다. 유럽위원회가 승인하면 이 두가지 조세 박스 제도는 승인 받은 해의 1월 1일부로 발효된다.

외국법인의 지점의 경우 네덜란드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고정사업장(외국 법인의 사업이 수행되는 곳이 고정된 영업장소인 경우) 또는 네덜란드와 외국법인의 거주국가 사이에 체결된 조세협정에 명기되어 있는 간주고정사업장(외국본점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법인 등)이 할 수 있는 성질의 활동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 4. 과세표준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은, 어떠한 형태의 소득이든 허용가능한 비용공제를 차감한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이사의 보수는 해당보수가 주주에 대한 숨겨진 이익배당으로 간주되지 않는 한 공제 가능하다. 범칙금, 벌금과 같은 특별한 비용과 법인세 공제되지 않는다.

##### 가. 감가상각

시간이 지나며 가치가 상실되는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자산 즉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은 회사가 이익을 보거나 손실을 보든 강제적으로 발생한다. 낮은 취득가격으로 얻은 자산은 일반적으로 네덜란드 길더(NLG)1,000 이하의 취득가격으로 얻은 자산이 해당된다. 취득한 해에 완전한 감가상각이 될 수 있다.

이 제도가 "건전한 기업 관습"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적용된다면 감가상각의 모든 제도(정액법, 정율법 등)가 허용이 된다. 이 제도에 있어서 변화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허용되지만 단지 조세목적을 위해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 사실상 상각율은 납세자와 조세당

국 양자사이에서 정하게 된다. 환경자산과 특정 지역에서 사용되는 자산과 특정한 혁신적인 자산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감가상각제도가 적용된다.

현행의 감가상각 제도와는 달리, 부동산 소유자들은 네덜란드에서의 부동산세와 관련하여 이제 더 이상 지방 세무 당국에서 평가하여 사전에 정해놓은 가액 이하의 가액으로는 자신들의 소유 부동산을 감가상각할 수 없다. 본 세법에는 포트폴리오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지방 세무 당국에서 평가한 가액 미만의 가액으로 감가상각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실제로 사용하는 부동산이나 그룹 내 어느 회사에게 임대해준 부동산은 지방 세무 당국에서 평가한 가액의 절반까지 감가상각할 수 있다.

#### 나. 재고자산의 평가

건전한 기업관행원칙에 의거 여러 가지 재고자산평가방식이 허용되는데 후입선출법, 선입선출법, 고가선출법, 기본재고법에 따라 취득시의 가격, 또는 그 가격이 취득시 가격보다 낮더라도 현재 시장가치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평가방법은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고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이 허용되지 않는다.

#### 다. 양도소득

양도소득과 손실은 과세대상소득에 포함된다. 건전한 기업관행의 일반원칙은 양도소득이 실현될 때까지 비과세이나 양도손실은 합리적으로 기대될 때 공제가 가능하다. 이 원칙에 대한 중요한 예외는 지분참여 면세에 근거한 실질주식 보유처분에 대한 양도소득 또는 손실이다. 특정 양도소득은 세금유예준비금으로 대체되기도 한다.

#### 라. 이월결손

네덜란드에서는 손실 이월 제도가 자유롭다. 거주자 및 비거주자 모두 손실에 대해 전기 이월은 1년간 할 수 있으며 차기 이월은 9년 동안 할 수 있다. 이러한 손실은 손실규정을 이용하여 세무 조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에는 전기 이월 기간이 3년이었던데 반해 차기 이월기간은

무제한이었다. 기존의 손실에 대해서는 기득권에 입각한 조치가 도입되었으며 2002년을 포함한 그 이전의 모든 손실은 2002년 손실로 간주되고, 이는 2011년을 포함하여 그 때까지의 이익으로 상계할 수 있다.

손실 이월에 대한 제한 사항은 최종 주주에 상당한 변화가 있고 이와 관련하여 회사가 기업 활동을 중단하거나 사업규모를 70% 이상 축소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기업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손실은 지분 중 적어도 70% 이상이 동일 개인 주주들이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차기 이월될 수 있다. 사업이 70% 이상 축소되고 주식의 70% 미만이 동일한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손실은 원래의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장래의 이익에서만 공제될 수 있다.

지주회사 및 그룹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추가 제한이 적용된다. 이러한 회사들은 유사한 활동이 수행된 기간에 발생한 과세대상 이익으로 특정연도에 발생한 세금 손실분을 보전하는 것만 허용된다. 본질적으로 이 규정에서는 순수한 지주회사나 금융회사가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새로운 활동의 결과 발생하는 이익으로 지주회사의 활동 결과 발생한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순수 지주회사로서의 신분을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주회사가 순수 지주회사로서의 신분을 이미 훼손시킨 이후에 발생하는 손실은 아무 제한없이 그 이후의 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다.

지주회사란 해당연도 중 또는 거의 전체 기간 중의 활동이 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관계회사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회사로 정의된다. 최소한 25명의 정규직원을 두고 있으면서 지주 활동이나 그룹 재무활동에 관여하지 않는 회사는 이 새로운 법률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 마. 투자비용공제

투자액의 일정비율로 계산된 특정자산에 있어서 투자에 대한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외국의 고정 사업장이나 다른 사람의 처분에 위탁 예정되어 있는 자산은 비용공제대상이 아니다. 토지나 주택, 개인용 자동차, 증권, 영업권, 허가권, 동물과 기타 다른 사항에 대한 투자도 공제대상이 될 수 있

다. 근친간의 거래도 세액공제에서 배제되며 연간 NLG 3,800에서 NLG 556,000(1999년)사이의 적격한 연간 총투자액만이 비용공제가 가능하다. 각 개별자산은 적어도 NLG 1,000의 취득비용을 갖고 있어야 하며 비용공제는 연간투자액이 NIG 3,800이내인 경우 27%에서 NLG 556,000을 초과하는 경우 0%까지 범위에서 점증하는 비율로 계산하여 총연간 투자액의 취득원가의 일정비율로 계산한다.

#### 바. 에너지 공제

투자비용공제에 추가하여 에너지 투자비용공제 또한 허용된다. 이 공제액은 유효투자액이 NLG 64,000까지는 52% NIG 495,000을 초과하는 경우 40%(0에서부터 NLG 205백만을 초과하는 정도까지)의 범위에서 점증율을 이용하여 총 적격 연간투자액의 일정율로 계산된다.

#### 사. 연구개발

특정활동과 관련되어 지급된 급여에 대한 임금세 경감이 고용주에게 허용된다. 이 세액공제는 NIG 150,000금액까지는 연구조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임금액의 40%까지 그리고 NLG 150,000을 초과하는 경우 13%까지 허용된다. 고용주당 또는 회계연도당 최대허용금액은 NLG 15백만이다. 이 유효한 연구개발활동은 체계적으로 조직되어야 하고 선행 실용 가능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기술물리학적제품이나 생산과정에 있어서 직접적이고 독창적인 목적이 있어야 한다. 연구개발공제는 외국개발진을 위한 급여의 35% 세금면제를 포함하여 급여액에 대하여 산정된다.

#### 아. 자유상각

자유상각은 정부에 의하여 특정된 환경보호를 위하여 중요한 자산에 대하여 인정된다. 또한 정부에 의하여 상술된 지역에 있어서의 생산을 위한 자산, 근로환경을 개선키 위한 투자, 영화산업에 있어서의 투자, 고도의 기술적 가치를 지닌 자산, 정부에 의하여 지정된 연구개발을 위한 자산등도 자유생각의 요건을 충족시킨다. 허가원, 인가원, 노하우등과 같은 무형자산의 형태에 있어서 혁신적 기술은 해당자산이 외국에 위치한 사업으로부터



획득하여 네덜란드에 이전되는 자산이라면 자유로이 상각할 수 있다.

#### 자. 교육비용

회사는 고용인의 교육비용의 추가20%(이러한 지출이 충분히 공제될 수 있는 경우)를 공제할 수 있다. 연수비용이 NLG 256,00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지출의 초기 NLG 62,000의 40%가 추가공제 가능하다. 이것에 더하여 40세이상의 고용인을 위한 교육비용에 대해 40%의 공제가 가능하다. 추가공제 최대액은 NIG 5백만이다.

### 5. 법인세의 부과와 징수

일반적으로 과세연도는 역년에 의한다. 그러나 법인 납세자는 정관에 기재된 과세연도를 이탈하지 않는 다른 과세연도를 선택할 수 있다. 법인소득신고서 제출기한은 세무당국이 납세신고서 양식을 회사에 보낼 때 설정된다. 신고서는 양식작성을 위하여 최소한 1개월전에 보내져야 한다. 제출기한 연장은 요청시 즉시 연장될수 있다.

과세연도중 사전과세가 부과된다. 사전과세가 확정과세보다 높을 때의 그 초과분은 이자와 함께 반환되며 이 경우 그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과세대상소득이다. 확정과세는 과세연도말부터 3년내에 결정되어야 하며 신고서 제출기한의 연장이 이 기간에 더해진다. 세금은 과세일로부터 2월 이내에 지불되어야 하며 사전과세와 확정과세일 사이의 차이는 응분의 이자가 지급되나 그 이자는 과세연도말에 지급된다.

세무조사관이 확정과세가 이루어진 때를 정당하게 알지 못한 때 새로 설정된 일자로부터 5년내에 보조과세의 부과가 허용된다. 해외로부터의 소득에 대하여는 12년 이내에서 보조과세가 허용되며 이 보조과세에 대하여 과세금액의 100%에 달할 때까지의 이자와 과태료가 포함된다. 이 과태료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 6. 네덜란드 조세 통칙

조세 통칙 적용 정책의 기본은 네덜란드 재무부 장관이 공포한 여러가지 법령에 반영되어 있으며 또한, 네덜란드 세법에서 (무엇보다도) 독립 기업의 원칙을 성문화함으로써 반영하고 있다. 네덜란드 통칙 적용 실무는 이전가격 사전합의 제도 (Advance Price Agreements; “APAs”) 및 사전 조세통칙 적용 제도 (Advance Tax Rulings; “ATRs”) 두 가지 부분으로 분류된다.

### 가. APA (Advance Price Agreements)

APA는 그룹 내부 거래에서 적용되는 이전가격의 독립 기업의 특성에 따른 확정을 규정한 것이다. APA를 신청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네덜란드 라이선싱 및 금융 회사들이다. APA를 취득하려면 금융/라이선싱 회사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i) 네덜란드 내에 상당한 실물 자산을 두고 있어야 하며
- (ii) 상당한 위험을 효율적으로 부딪쳐야 하고 또한 이러한 위험을 견딜 수 있을만한 적절한 지분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 (iii) 독립 기업의 거래 특성을 입증하는 문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들은 대개 실무적으로 충족될 수 있는 것들이다.

네덜란드는 금융 및 라이선싱 기업들에게는 매력적인 조세 지역인데, 그 이유는 조세 협정 네트워크가 광범위하고 네덜란드 금융/라이선싱 기업이 지불하는 지불금에 대해 이자 및 로열티 원천징수세가 없으며 (총)수입금에서 독립 기업의 비용이 공제되고 (총)수입금에 대해 외국 원천징수세가 차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금융/라이선싱 거래에 대해 조세 통칙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매력은 더욱 커지는 것이다.

#### 나. ATR (Advance Tax Rulings)

ATR은 한가지 (제안) 거래 또는 복합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 결정 내용 확정을 규정한 것이며, 납세자가 사전 확정을 원하고 네덜란드 조세 처분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대부분 신청하여 이용한다. 예를 들어, ATR에서는 네덜란드의 주식 배당금에 대한 세금 면제 제도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주식 배당금에 대한 세금 면제 제도는 네덜란드 조세 체계의 여러 가지 주요 특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통칙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 제도의 매력을 배가시키는 것이다.

#### 다. 절차

APA/ATR 허가 취득 절차는 아주 간단하다. 신청서를 네덜란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무서가 이 신청서를 APA/ATR 전담팀으로 보내고 이 팀이 APA/ATR을 발급한다. 정해진 시한은 없으나, APA/ATR은 일반적으로 4-6주 이내에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주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은 통칙 적용 과정에서 네덜란드 세무 당국이 협조적이며 네덜란드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이다.

### 7. 참여 면제 제도

네덜란드 지주회사를 해외 지주회사로 종종 사용하는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소위 “참여 면제” 제도 때문입니다. 참여 면제를 적용받으면, 해당 보유 지분을 통해 얻는 모든 혜택에 대해 네덜란드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이러한 혜택에는 배당금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지주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처분함으로써 실현되는 자

본 이득도 포함됩니다. 참여 면제 제도는 네덜란드가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도입한 특수 조세 인센티브가 아닙니다. 이는 기업으로부터 주주들에게로 이동되는 이익금에 대해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또 다른 하나의 방법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면제 또는 신용 제도). 모든 네덜란드 기업은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자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참여 면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네덜란드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발행 및 공모 주식을 최소한 5%를 보유하여야 하며,
- 네덜란드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거주 국가에서 이익에 대해 일괄세 (lump sum tax)가 아닌 세금을 납부하여 합니다. 원래 이러한 세금의 세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1% 정도로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가 일시적으로 면제 기간을 적용받고 있고
- 그 결과 특정 기간 동안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주식을 포트폴리오 투자로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의 실제 적용 사례로는, 네덜란드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수행하는 활동과 궁극적인 모기업이 수행하는 활동 사이에 모종의 사업적 연관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참여 면제의 적용에 관해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네덜란드 조세 당국과 이 문제를 사전에 협의하고 조세 사정관과 구속력있는 조세 판정 (“ATR”이라고 하는 사전 조세 판정) 을 확정해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 8. 네덜란드 자본세 폐지

2006년 1월 1일부로 네덜란드는 자본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네덜란드 지주회사에 대한 모든 자본 공여는 그것이 현금 또는 현물에 의한 것이냐에 불문하고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네덜란드 지주회사의 최소 주식 자본금은 18,000입니다.

## 9. 원천세

### 가. 배당금

현금 혹은 기타 현물 배당금, 이익배분사채에 대한 이자 그리고 법인의 부채청산에 따른 자본의 반제금을 초과한 지불금이 해당되는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에 대해 거주자 법인이 지불하는 배당금에는 원천세가 징수된다. 조세협정에 의해 경감되지 않는다면 세율은 25%이다.(6.5참고) 만일 배당금이 거주자에게 지불될 경우, 소득세에 대한 과세는 공제될 수 있는 반면 비거주자에게 지불될 경우에는 그것이 최종적인 것이다.

배당금의 재배분에 관한 네덜란드 원천세에 대해 비거주자인 법인 내의 적어도 25%지분으로부터 받은 외국배당금에서 적어도 5%의 비율로 네덜란드 법인은 원천세에 대한 공제를 받는다. 배당자회사는 네덜란드가 조약을 체결했고 네덜란드 법인이 지급배당금에 관해 지분참여면세권을 반드시 가지고 있는 상태인 거주자이어야 한다. 외국원천세에 관한 공제는 분배된 배당금의 3%나 총 수납된 외국배당금의 3%중 낮은 금액이다.

EU회원국의 경우, 배당금, 청산수익, 다른 EU회원국내의 거주자법인에 대한 기타 이익들의 배분 그리고 법인세의 적용에는 배당금 원천세가 면세된다. 이 면제를 받으려면 해당법인은 적어도 1년의 연속된 기간동안 배당법인 자본의 적어도 25%를 소유하여야 한다(또는 특히,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고 영연방과의 조세협약에 의해 이러한 기준이 사용되는 경우 조세협약에 의한 의결권의 25%).

기타 EU회원국내의 모회사에게 지불되는 배당금의 원천세에 대한 면세를 획득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지분은 자본 또는 네덜란드 배당자(구)회사의 의결권내에서 10%까지 경감된다. 이와 같은 경감은 상호이익심사의 대상이다.

- 배분된 배당금은 면세되어지거나 혹은 모·자회사 지침(90/435/EEC)의 4항에 따라 모회사의 회원국내에서 지분의 적어도 10%에 대해 소득세 적용에 관한 세액공제의 자격이 있다.

- 이 회원국은 적어도 10%의 지분에 대하여 지불된 배당금에 관해 앞서 언급한 방침의 5항 규칙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이자

배당금으로 여겨진 이익배분사채에 대한 이자를 제외하고 이자에 대한 원천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 다. 기술 사용료

기술사용료에 대한 원천과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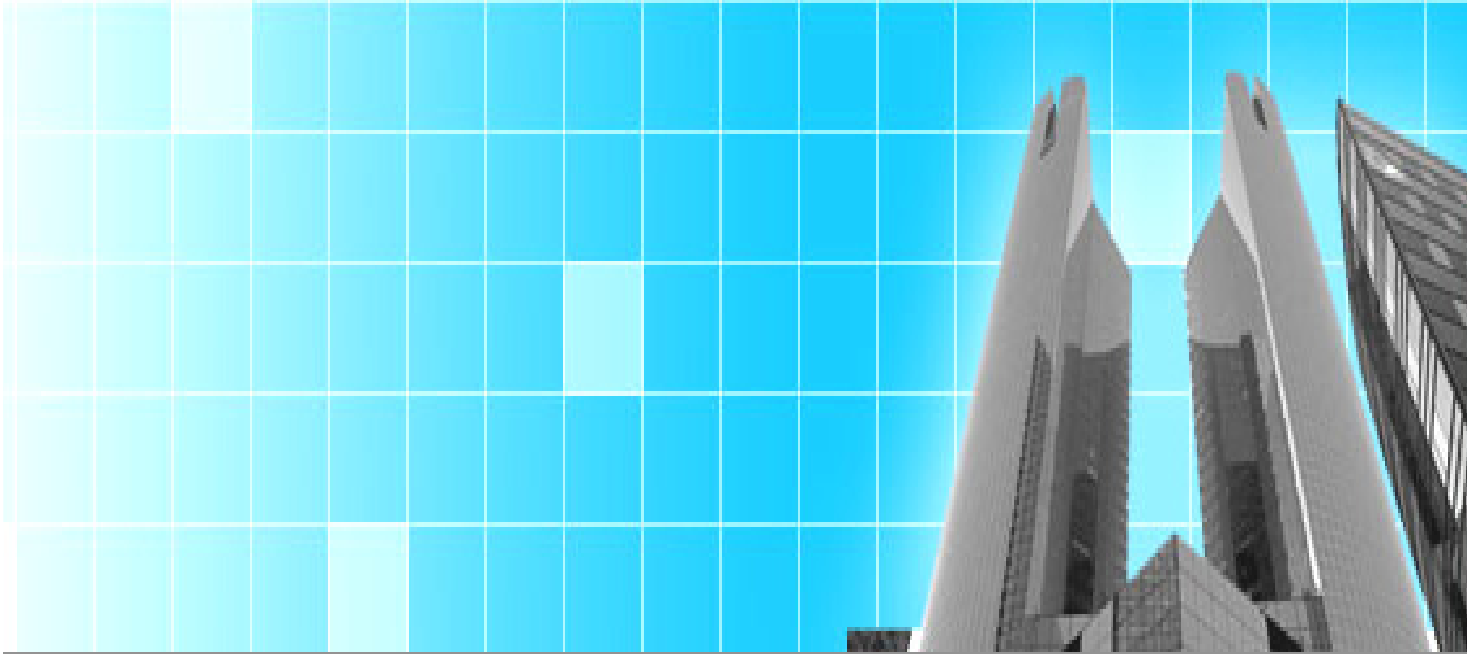
#### 라. 기타

법인에 의해 얻어진 소득에 대한 기타 다른 원천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 마. 조세협약

대부분의 조세협약에서 배당금 원천세율은 0%, 5% 혹은 비거주자인 법인이 배당회사 자본(또는 이 기준이 적용될 경우 협약하에서의 의결지분)의 적어도 25%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는 10%로 경감된다. 경감은 두가지 방법중 하나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네덜란드는 조세 협정 체결망이 우수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이자, 로열티 및 배당금에 대한 협정 세율이 낮기 때문에 네덜란드는 조세 계획 수립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이자와 로열티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 자체를 전혀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네덜란드가 체결한 조세 협정상의 최고 세율이 다른 나라들이 체결한 조세 협정상의 최고 세율 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덜란드가 체결한 조세 협정들의 또 한가지 주목할만한 특징은 네덜란드는 네덜란드 거주자 (기업) 소유로 되어 있는 회사에 대한 지분을 양도할 경우 이에 대해 비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면제 문제를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놓은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참여 면제가 적용되는 경우 네덜란드에서는 자본이득은 면세이기 때문에, 네덜란드 지주회사는 네덜란드 또는 자회사 소재 국가에서 면세 계획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 IV. 소득세

1. 과세대상자
2. 과세대상 소득
3. 면세소득
4. 자본이득
5. 소득공제, 비용공제 그리고 세액공제
6. 손 실
7. 세 율
8. 소득세 과세







## IV. 소득세

### 1. 과세대상자

전세계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아래의 개인에게 징수된다.

- 네덜란드 거주자
- 고용되어진 주에서 해외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것을 제외하고, 네덜란드에 또는 공공 법인체에 의해 고용된 네덜란드 국민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와 27세 미만의 부양자녀)
- 해외에 복역하는 직업군인인 네덜란드 국민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비거주자는 특정 유형의 네덜란드 원천소득에 대해서 개인소득세를 적용받는다. 법률은 거주지를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에 의하면, 다음의 상황은 특히 관련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영속적인 가정의 가능성, 배우자와 자녀가 생활하는 장소, 개인의 직업과 경제와의 관계(예를들면, 네덜란드에서 이루어지는 고용)와 그 중요함이 적은 국적 다른 국가의 거주자가 되지 않고 나라를 떠나있거나 1년 이내에 돌아오는 네덜란드 거주자는 떠나있는 전체 기간 동안 거주자로 간주된다.

배우자는 그들의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과세된다.(예를 들면, 현재 또는 과거의 고용에서의 소득, 전문소득, 사업과 연금소득) 배우자의 투자소득은 높은 소득을 가진 배우자에게 과세된다. 18세 미만 자녀의 투자소득은 높은 소득을 가진 부모에게 또한 과세된다. 고용주는 사회 보장 기부금을 조성해야 한다. 영속적 별거중인 배우자는 모든 소득에 대해 개별 과세된다. 이들 자녀의 투자소득은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에게 과세된다.

## 2. 과세대상 소득

거주자개인은 화폐나 화폐가치로 받은 전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된다. 과세되기 위해, 소득은 아래항목에서 발생되어야 한다.

- (a) 사업에서의 이윤 또는 자유전문직에서의 소득
- (b) 과거 또는 현재의 고용에서의 소득
- (c) 기타 노동에서의 소득
- (d) 투자소득과 주기적인 급여
- (e) “실질이윤지분”에서의 배당금과 자본이득(또는 자본손실)

개인공제와 충당금을 차감한 이런 원천에서의 소득은 누진세로 과세된다. 기업의 자산에 속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자본이득(또는 자본손실)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하나의 원천의 마이너스 결과는 다른 원천의 플러스결과에 대해 상쇄되어 질 수 있다. (e)항목에 근거한, 자본이득(또는 자본손실)은 개별범주로서 과세된다. 사업에서의 이윤(발생주의 기준)과 실질이윤지분 처분에서의 이득(거래의 시기)을 제외하고, 소득은 현금주의에 의해 산출된다.

### 가. 사업에서의 이윤 또는 자유전문직에서의 소득

사업에서의 이윤은 일관성 있는 그리고 조세결과의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는 건전한 경영관행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만 한다. 실제적으로, 이것은 법률규정과 일치하고 상업적으로 인정(발생주의)되는 한 납세자가 자신의 산출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영어자산에 대한 자본이득과 자본손실은 기업의 이윤에 포함된다. 이윤의 재투자는 비용 공제되지 않는다. 투자비용공제는 NLG 3,800과 556,000 사이의 적절한 연간투자에 대해서 그리고 에너지절약투자는 NLG 3,800과 205백만 사이에 대해 유효하다. 더욱이, 추가비용공제는 기업가나 종업원의 연수비에 대해 허용된다.

일반적인 조합과 대부분의 유한조합은 투명하다고 간주된다. 각 조합원

은 조합내의 자신의 지분에 비례해서 기업을 소유하고 있다고 간주되며, 자신이 (인정한) 방식대로 이윤을 산출할 수 있다. 그러나, 유한조합은 특정한 환경에 의하여, 유동자산에서의 소득을 얻는 투자자로 간주되어 질 수도 있다.

#### 나. 과거 또는 현재의 고용에서의 소득

과거 또는 현재의 고용에서의 소득은 급여, 요양비, 상여금, 기타 보수, 연금, 특정 사회보장금을 포함한다.

#### 다. 기타 노동에서의 소득

기타 노동에서의 소득은 사업 또는 고용에서의 소득으로 간주되어지지 않는 활동에 대한 소득을 의미한다. 기타 노동에서의 소득은 용역에 대한 보수, 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노동, 비투기성 자본이득(즉, 명백히 예측 가능한 이윤의 거래에서의 자본이득), 작가나 발명가의 저작권 또는 특허권 처분 혹은 개발에서의 소득을 포함한다.

#### 라. 투자소득과 주기적인 급여

이 항목은 지대, 배당금, 청산지불(투자자본의 재지불은 배제된다), 이자, 연금, 소유주의 점유주거에서의 간주소득, 특정자본의 자연증가에서의 간주소득, 비거주자투자기금의 주식에서의 간주소득을 포함한다. 소유주가 점유한 비거주주거에서의 간주권고는, 만약 그 액수가 NLG 150,000을 초과하면 주거의 공정시장가격의 1.25 %로 계산된다. 간주소득의 최고금액은 NLG 16,800 이다. 주택과 관련된 특정원가(예를들어, 저당에 의한 담보의 유무에 상관없는 이자)는 공제된다. 이 공제비용은 소득의 기타 원천에 대해 상쇄되는 부동산의 마이너스소득에서 간혹 발생된다.

#### 마. 부가급부

원칙적으로, 예를 들어 고용인에게 받은 피고용인의 모든 종류의 보수인 즉, 부가급부는 과세대상이며, 공정시장가치로 평가된다. 고용주 또는 사업에 의해 제공된 차를 피고용인 또는 기업가가 임의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

예, 연간 1,000 Km 이상 개인용으로 사용되며, 정상적으로 차의 명목가치의 20% (부가가치세 포함)가 그의 과세대상소득에 첨가된다. 본 가치의 24%는 만일 피고용인이 근무지로 일주일에 최소 3번 출근하고, 집과 근무지의 거리가 30 Km를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소득에 첨가된다.

#### 바. 이사의 보수

법인의 이사와 감독관은 소득세목적상 피고용인으로 간주된다.

#### 사. 퇴직연금

요건을 갖춘 연금계획에 근거한 퇴직연금은 공제가능하다. 고용주에 의해 납부된 권리금은 면세이다. 후속연금지불은 피고용인의 과세대상소득에 포함된다. 그러나, 피고용인에 고용주에 의해 허용된 연금권리의 가치는 만일 연금계획이 적절하지 않다면 (예를 들어, 연금이 특정한도를 초과한다면) 피고용인의 과세대상소득에 포함된다. 주노령연금(AOW)과 기타 연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포함된다. 개인보험에 기초하여 받은 연금은 분할수취금이 보험회사에 납부된 총보험금을 초과하는 범위와 시기에 과세대상소득에 포함된다. 과세대상소득에서 공제되는 개인연금에 대한 보험료는 납부된 보험료총액의 만기를 고려하지 않는다.

### 3. 면세소득

#### 가. 일반 면세 항목

다음 유형의 소득은 소득세에서 면세이다.

- 특정사회보장지불, 예를 들어, 의료비(ZFW)
- 양육비 지불(AKW)
- 상속과 증여
- 우연한 게임의 승리, 예를 들어 복권(확정 25%의 원천징수세가 적용된다).

## 나. 저축과 투자

거주자법인에 의해 납부된 배당금과 이자에 대해서는, 이런 소득의 각각 항목에 대해 NLG 1,000(결혼한부부는 NLG 2,000)의 면세가 허용된다. 18세 미만의 자녀 각각에 대해서는, 자녀에 의해 받은 이자에 대해 NLG 500의 추가최고면세가 적용된다. NLG 2,844(1999)의 연간 합산금액까지의 면세는 저축과 요건을 갖춘 스톡옵션계획에 근거하여 피고용인에게 허용되는 권리뿐만 아니라 근로자저축, 이윤분배기구에 의하여 허용된 이윤분배권에 대하여 허용된다. 요건을 갖춘 저축과 이윤분배기구에서의 이자와 배당금은 이런 항목에 대해 NLG 1,000까지의 피고용인에 대해 면세이다(결혼한 부부는 NLG 2,000 까지).

승인된 “녹색기금”에서의 배당금과 이자납부는 소득세에서 면세이다. 이런 기금은 환경에 대한 목적을 지니고, 환경을 위하여 계획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증권투자를 실질적으로 운영한다. NLG 5,000(결혼한 부부는 NLG 10,000)의 추가면세는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가의 벤처 대부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 허용된다.

## 다. 사업의 종결

사업의 중단 또는 양도에 있어서, 모든 (비밀) 준비금, 영업권 그리고 연금준비금(FOR)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윤에 포함된다. 그러나, NLG 20,000의 면세가 적용된다. 만일 소유주가 최소 55세 또는 장애인이고, 그의 전사업을 종결한다면, 면세는 NLG 45,000이다. 처음 두 소득계층을 초과하는 범위까지, 중단이윤은 45%의 정액율로 과세된다. 사업의 중단이 기업가의 사망에 의한 것이라면, 20%의 정액율이 적용된다. 기업은 특정한 한도를 적용하는 연금에 대한 계약을 또한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의 가치는 중단이윤에서 공제된다. 과세이연경감은 기업가의 가까운 가족 구성원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또는 사업이 기업가가 설립한 법인에 의해 계속되는 경우에 유효하다.

## 4. 자본이득

일반적으로, 자본이득은 과세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업 과정에서 실현된 자본이득과 특정 비투기성 이득은 과세대상소득에 포함된다. 거주자 법인 또는 비거주자법인내의 기타 실질이윤지분의 매각과 처분을 통해 실현된 기타 자본이득은 아래의 경우라면 소득세를 적용받는다.

- 거주자 법인 또는 비거주자법인내의 발행된 주식자본의 최소 5% 또는 특정등급 또는 특정주식의 5%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혼자 또는 배우자와 함께인, 납세자
- 납세자나 배우자가 같은 법인의 모든 주식이 실질이윤으로 추정되는 이런 이윤을 소유한 직계 존비속을 갖고 있다면 (직계 존비속의 지분은 5%의 기준점을 결정하는데 합산되지 않는다)

실질이윤과 관련된 배당금과 자본이득(넓은 개념의) 그리고 특정 기타 급부는 25%의 특별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런 세율은 이런 소득과 이득이 처음 두가지 조세계층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을 합한, 범위에 적용된다. 게다가, 이런 실질이윤에 관련된 모든 잉여손실과 원가의 25%는 납세자의 소득에 누진세율을 적용한 납부세액에서 공제되어진다. 자본이득과 자본손실은 매가(또는 공정시작가치)와 중요취득가격사이의 차이로서 산출된다.

## 5. 소득공제, 비용공제 그리고 세액공제

### 가. 비용에 대한 공제

각 원천에서 과세대상소득을 산출하는데 있어, 일반적으로, 소득의 회득과 징수 또는 유지하는데 필수적으로 발생된 모든 비용은 공제된다. 혼합 성격의 특정비용은 (예를 들어, 여행용가방 또는 식품) 공제되지 않으나, 특정한도(예를 들어, 컴퓨터 또는 세미나)는 공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고용주로부터 피고용인이 받은 이런 비용에 대한 보수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식품 또는 세미나).

## 나. 근로소득공제

현재 고용에서의 소득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 이 소득의 12%와 동일한 고용소득공제가 허용되며, 연간 최저 NLG 258와 최고 NLG 3,174 가 적용된다. 만약 납세자가 자신의 실제비용이 더 높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높은 금액은 공제되어진다. 연금득에 대해서는, NLG 1,055의 고정공제가 있다. 게다가, 집과 근무지의 거리에 대하여, 0 에서 NLG 2,050사이에서(20Km 그리고 이상) 다양하게, 통근자의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만약 납세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소득공제는 0 에서 NLG 5,430사이에서(80Km 그리고 이상) 다양하다. 고용주는 대중교통을 사용하는 피고용인에 대하여, 모든 통근비를 처리할 수 있는 피고용인 면세보수를 인정할 수 있도록 허용 받는다. 통근소득공제로 경감되는 모든 이런 보수는 피고용인이 제기할 수 있다.

기업가 또는 자가고용개인은 예를 들어, 과세대상금액이 증가할 때 비용공제가 감소되는 과세대상이윤금액에 대해 다양하게 비용공제를 허용 받는다. 과세대상 이윤이 NLG 94,560이하일 때, 비용공제는 NLG 11,850이며, 이윤이 NLG 106,575를 초과할 때, 비용공제는 NLG 7,515이다. 개인에게 부여된 이 경감은 그들 사업의 첫 3년에 대해 NLG 3,775의 추가비용공제를 허용 받는다. 이 비용공제는 기업가가 요건을 갖춘 연구개발 활동에 역년당 625시간 이상을 소비했다면, NLG 10,621로 증가된다.

또 다른 소득공제는 기업내에 배우자가 일하고 있는 기업가에게 허용된다. 소득공제는 역년내에 근무한 시간의 금액에 대하여 과세대상이윤의 1.25 %에서 4% 사이로 다양하다. 본 소득공제의 의의제기를 대신하여, 기업가는 기본충당금의 최저 두배의 공정한 보수를 배우자에게 지불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보수는 기업가의 과세대상이윤에서 공제가능하며, 배우자에게 과세된다. 마지막으로, 원칙적으로, 배우자는 조합형성이 허용된다. 두 배우자는 이후에 기업가로서 간주되고, 그들의 사업소득에 대해 개별 과세된다.

기업은 과세대상이윤의 12%(특정 최대값을 적용하는)로 제시되는 과세 이연연금준비금(FOR)을 형성하는 것을 허용받는다. 이 준비금은 대차대조표내에 포함되지 않으며, 요건을 갖춘 보험회사에게 노령연금을 위해 납부된 보험료를 조건으로 전체 또는 일부가 취소 될 수 있다. 집주인이 한 개 또는 이상의 방을 임대하는 집은 그의 원래의 집이며, 연간 NLG 7,000 의 임대소득에 대해 면세가 허용된다. 만약 이 임대수익이 소득을 초과한다면, 전체임대소득은 과세 될 것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모두 집에 거주해야만 한다.

#### 다. 개인비용공제

다음은 납세자가 다양한 원천소득의 합산순결과에서 이익을 제기하는 비용공제이다. 다음의 비용공제는 일반적으로 허용된다.

- 대부금에 관련된 은행수수료를 포함하는, 비소득관련이자지불 대부분의 경우에, 최고비용공제는 NLG 5,000 이다(결혼한 부부에 대해서는 NLG 10,000)
- 자녀양육에 대한 고정금액 이외에, 위자료
- 지불금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장애보험, 질병보험 또는 사고 보험에 대해 납부된 보험료
- 특정 은퇴연금에 대해 납부된 보험료. NLG 6,075, NLG 60,734, NLG 12,148 의 세가지 최대의 비용공제가 있다(결혼한 부부의 경우에 비용공제는 두배이다) NLG 60,734와 NLG 12,148의 비용공제는 납세자가 "불충분한" 연금권리를 가진 경우에만 유효하다.
- 특정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의료비비용 (예를들어, 소득공제이전의 소득이 NLG 103,099 또는 그이상이라면, 한도는 NLG 12,578 이다)
- 납세자의 직업과 관련된 교육을 위한 비용 (수업에 대한 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
- 특정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종교, 자선 또는 문화 기관에 대한 증여 (NLG 120의 시초 또는 과세대상소득의 그리고 과세대상 소득의 10%의 상한선에서 높은쪽에 적용한다)



- 신생기업의 벤처대부금에 대한 발생된 손실은 기업가당 최대 NLG 50,000 금액까지 공제될 수 있다.

#### 라. 개인소득공제

NLG 8,380의 기초소득공제가 모든 납세자에게 허용된다. 배우자의 소득이 소득공제금액 미만이라면, 소득공제는 다른 배우자에게 이전된다. 특정 조건에 대하여, 결혼하지않은 동거인은 두사람 사이에서 이 소득공제를 또한 이전할 수 있다. NLG 419의 추가기초소득공제가 또한 허용되나, 배우자 또는 동거인에게 이전되지는 않는다. 부양가족 그리고 노인과 함께하는 독신부부의 경우에 소득공제는 증가된다.

## 6. 손 실

기초소득공제의 경감이전에 발생된 현행연도의 부정적인 과세대상소득은 (예를 들어 모든 원천소득의 합산) 선행 3년의 과세대상소득에 대해 상쇄하기 위해 소급공제 수 있으며, 다음의 8년의 과세대상소득에 대해 상쇄하기 위해 이월될 수 있다. "실질이윤"지분과 관련된 자본손실은 50% 와 60%의 누진율 대신에, 25% 세율을 적용하여 경감될 수 있다.

## 7. 세 율

소득세의 경우 세가지 과세대상 소득이 있는데 이들은 각각 하나의 박스에 포함된다. 각 박스별로 세율이 다르다.

- 박스1: 근로 및 주택소득에 얻는 과세 대상 소득(누진율로 최대 52%)
- 박스2: 상당한 이해관계에서 얻는 과세 대상 소득(고정세율 25%)
- \* 2007년 한시적으로 25만유로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만 22%로 낮춰서 적용
- 박스3: 저축 및 투자소득에서 얻는 과세 대상 소득(고정세율 30%)

## 〈개인소득세율〉

| 과세대상금액          | 소득세 및 사회보장보험료율   |                  |
|-----------------|------------------|------------------|
|                 | 65세 까지           | 65세 이상           |
| 0~€17,046       | 소득세 및 보험료 34.15% | 소득세 및 보험료 16.25% |
| €17,046~€30,631 | 소득세 및 보험료 41.45% | 소득세 및 보험료 23.55% |
| €30,631~€52,228 | 세금 42%           | 세금 42%           |
| €52,228~        | 세금 52%           | 세금 52%           |

각 종류의 소득은 하나의 박스 내에서만 과세된다. 본질적으로 이중 과세는 결코 있을 수 없다. 하나의 박스에 해당하는 소득이 마이너스면, 이는 다른 박스에 있는 초과 소득과 상계될 수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과년도 또는 차년도에 동일 박스에서 마이너스 소득을 초과 소득과 상계하는 것은 가능하다.

## 8. 소득세 과세

과세연도는 역년이다. 조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년도동안 원천징수되고, 다음연도의 확정부과가 있던 없던 선부과이다. 일반적으로, 조세보고서는 다음 과세년도의 4월1일 까지이다. 제출일자의 연기는 일반적으로 가능하다.

### 가. 선부과

만일 납세의무가 과세연도이후에만 결정된다면(예를들어, 사업소득), 예비부과가 발생된다. 선납세는 확정세에 대해 세액공제된다. 결손은 부과되며, 잉여는 상환될 것이다(이자와 함께).

### 나. 원천징수세

거주자 법인이 그의 주주 또는 채권자에게 지불한 이윤분배채권에서의 배당금과 이자는, 개별적으로, 25%의 원천징수세를 적용받는다. 거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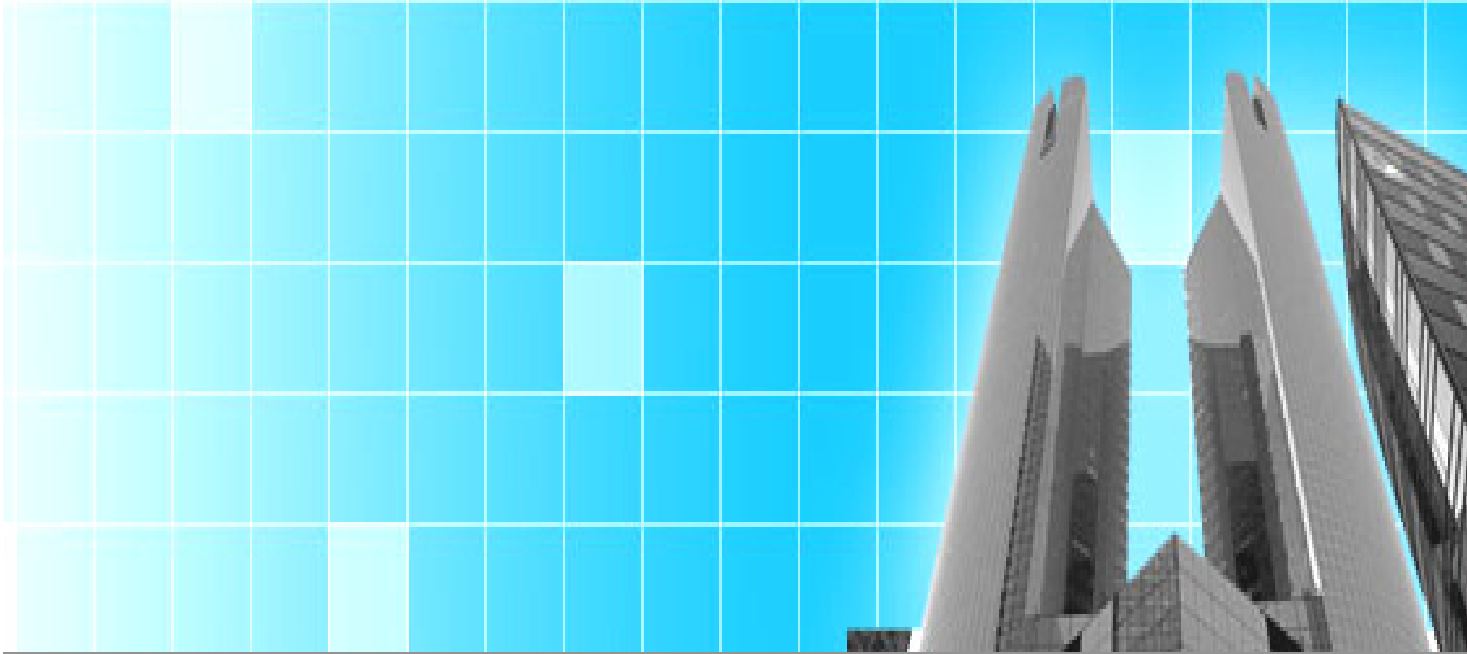
납세자는 그들 소득의 납부세액에 대해 세금공제를 할 수 있다. 기타 이자 또는 사용료는 원천징수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나, 2007년 세법개정시 배당금 원천징수세에 대한 표준 세율이 25%에서 15%로 인하되었다. 또한 유럽연합 거주자로서 5%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은 배당금 원천징수세가 면제된다. 반면, 유럽연합의 모기업/자회사에 관한 규정에서는 1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에 대해서만 이것이 적용된다. 또한 유럽연합 면세 신청에 있어 이제 더 이상 1년 보유 기간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 다. 확정부과

확정부과는 과세연도말에서 3년이내에 발생되어야 한다. 추가보충부과는 과세연도마감이후 5년이내에 허용되며, 더하여, 조세검사원이 확정부과발생시기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알고 있는, 새로운 자료만이 유효하다.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상기 언급된 기간은 12년이다. 제출기간의 연장은 상기의 기간에서 증가될 수 있다. 새로운 자료에 의해 나타난 추가부과는 추가부과와 이자의 100% 까지 비공제가능 벌금에 포함된다. 세금은 부과일자 이후 2개월 이내에 납부되어야 한다.





## V. 부가가치세

1. 개 요
2. 세 율
3. 국경 통과 구매 및 판매행위
4. 부가가치세 관리
5. 유예제도
6. 공급지 규정





## V. 부가가치세

### 1. 개요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의 거래(“공급”이라고도 함)에 대한 광범위한 기초세이다. 부가가치세의 원리와 구조는 유럽연합 법률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세율, 등록을 위한 매출 한도 등과 같은 일부 사항에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국별로 약간의 차이를 갖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복수 단계의 세금으로, 공급망에 속해 있는 각 단계에서 부과할 수 있다. 가장 간단한 형태로는, 기업이 자신의 매출(“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매출세”)를 부과하나, 자신의 구입행위에 대해 지불한 부가가치세(“매입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그 후 해당 기업은 세무 관청에 주기적으로 세무신고서를 제출하고 매출세에서 매입세를 공제한 후 잔액을 납부한다. 매입세가 매출세보다 많으면, 해당 기업은 환급을 받는다.

어떤 공급은 면세인데, 주로 금융 부문과 자산 부문이 그렇다. 면세공급을 하는 기업은 관련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권한이 없다. 어느 기업이 과세 대상 및 면세 공급을 모두 수행하면 이는 부분면세라고 하며, 이러한 기업은 매입세를 과세 대상 및 면세 공급에 할당하여야 한다. 과세 대상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만 환급된다.

부가가치세 규정에 따라 네덜란드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외국 기업은 원칙적으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네덜란드에서 과세 대상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외국 기업이 네덜란드의 매입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특별한 절차도 있다.

네덜란드에서 부가가치세 등록을 한 기업은 통상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서를 제출하고 월단위로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고와 납부는 익월말까지 접수시켜야 한다. 분기 순 납부액이 €4,084 이하인 기업은 신고와 납부를 분기에 한번 할 수 있다. 신고와 납부를 늦게 하면 벌금과 이자 부과가 있다.

## 2. 세 율

네덜란드에서는 부가가치세 표준 세율이 현재 19%인데, 이는 대부분의 재화와 용역에 적용된다. 보다 낮은 6%의 세율도 있는데, 이는 주로 식품, 서적 및 신문, 신문광고, 의약품, 여객운송, 호텔투숙 등에 적용된다. 상품의 수출은 특별한 절차가 따라야 하지만 일부 서비스의 수출과 마찬가지로 영세율이다. 이러한 절차는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및 제3국으로의 상품 수출별로 상이하다.

## 3. 국경 통과 구매 및 판매행위

A가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 있는 공급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하고 이러한 상품이 네덜란드로 운송되면, A는 19%의 네덜란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역내 취득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는 역부과 절차와 유사한데, A는 네덜란드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해당신고서에서 동금액을 매입세로 처리할 수 있다.

유럽연합 이외의 지역에서 구입하는 상품은 네덜란드로 수입시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 된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세관이 상품을 내주기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A가 상품을 주기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A는 라이선스("23조 라이선스"라고 부름)를 신청하여 정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때까지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A는 동일한 신고서에서 납부하여야 할 이러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청구함으로써 현금 흐름 희생을 피할 수 있다. 라이선스 신청은 지방세금 조사 기관으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품 중 일부를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 있는 고객에게 공급하는 것을 역내 공급이라고 한다. A는 해당 상품이 다른 회원국으로 발송되었다는 행정 증빙을 제공할 수 있고, 청구서에 자신의 부가가치세 확인 번호와 고객의 부가가치세 확인 번호를 명시하면, 이러한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다른 여러 가지 청구 및 신고 절차들도 있다.

#### 4. 부가가치세 관리

부가가치세는 고객에게 부과되는 것이며, 이는 공급되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한 청구서에 명기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지역별 세금 사정 기관이 정한 월별 또는 분기별 기준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세무 신고서를 토대로 세무서에 납부되는 것이다. 신고서 및 관련 납부액은 해당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세금 징수 기간에 제출 된다.

구입한 재화와 용역에 대해 공급자에게 지불하는 부가가치세(매입세)는 고객들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매출세)에서 공제 할 수 있다. 양자의 금액을 세무신고서상에 명기하여야 한다.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보다 많은 경우에는, 초과분은 세무 당국에서 환급 한다. 부과한 부가가치세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있는 권한은 통상적으로 청구서가 접수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이지 지불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세금 징수 기관에 납부하는 것은 고객에게 청구서가 제공되었을 때이지 지불을 받았을 때가 아닙니다.

##### 가. 예외 사항

부가가치세가 소비국에서 부과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예외 사항이 있다. 예를 들면, 어느 회원국에 있는 상점에서 구매 행위를 하는 민간인들은 해당 국가에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다른 회원국에 있는 민간인들에게 총 가액이 100,000유로 이상인 상품을 공급하는 통신판매 회사들은 이들 회원국에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한고 금액 100,000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국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는

전화로 이루어지는 구매행위에도 적용된다. 신차는 차량이 등록되는 국가가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중고차의 경우에는 차를 구입하는 회원국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가 여러 종류 있다. 면제란 거래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거래에 귀속되는 선납 부가가치세는 공제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과 같은 거래에 대해서는 면세가 적용된다.

- 고정 자산의 양도 또는 임차, 단 일부 예외가 있음. 예를 들면, 처음 사용 후 2년 이전에 신축 건물을 양도하거나, 공급자와 인수자가 과세 대상 양도행위에 대해 선택하였을 경우의 부동산은 과세대상이나, 과세 결정 가능성은 해당 부동산이 (거의) 전체적으로 과세 대상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된다.
- 의료서비스
- 교육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 사회 문화 서비스
- 은행이 수행하는 대부분의 서비스
- 보험 거래
- 공공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국의 비영리 활동
- 우편 서비스
- 매장/화장
- 스포츠( 유로 입장이 아닌 경우)
- 작곡가, 작가 및 언론인의 서비스

#### 나. ABC 공급

ABC 공급의 경우, 대표적인 구매 장소(예를 들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하는 장소)는 거래 수행의 토대가 되는 부가가치세 확인 번호를 발급한 국가가 된다. ABC 공급에서는 어느 회원국에 있는 공급자 A는 다른 회원국에 있는 고객 B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그는 이 상품을 제3의 회원

국에 있는 C에게 판매하는데, 이 경우 B는 A에게 상품을 직접 C에게 인도할 것을 지시한다. 이 경우, 거래는 C가 있는 국가에서 종료되며,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여기서 부과되어야 한다. 그러나 B가 갖고 있는 부가가치세 번호로 거래가 수행되었다면, B가 있는 국가가 취득 장소가 되고 또한 B의 국가가 부가가치세 납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중 과세 위험이 제기된다.

#### 다. 사내 공급

사내 공급은 개념적인 문제라고 한다. 생산자가 자신의 제품을 다른 회원국에 있는 물류 센터에 공급하였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개념적인 공급은 부가가치세 관리를 받아야 하며(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념적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 기초가 되는 비용 기준은 해당제품 또는 유사제품의 구매 가격을 토대로 한다. 이것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개념적 인도시점에서의 원가 기준 가격을 토대로 한다.

#### 라. 설치

설치 작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작업이 수행되는 회원국이 부과하는 세율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다. 모든 회원국이 “설치”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 유사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회원국에서는 설치가 어떤 것을 실제 설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다른 회원국에서는 나사를 몇 개만 조여도 설치라고 하는데도 있다.

#### 마. 운송

유럽연합내에서 운송 상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운송 서비스가 시작되는 회원국이 부과하여야 한다. 그러나 구매자(고객)의 부가가치세 확인번호를 가지고 운송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번호를 발급한 국가가 부과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네덜란드 운송업자가 상품을 네덜란드에서 마드리드로 운송하도록 지시하는 경우(네덜란드 부가가치세 번호를 사용하여)에는, 이 운송 서비스는 네덜란드 부가가

치세율의 적용을 받는다. 운송이 스페인 구매자(수하인)의 부가가치세 번호를 가지고 수행되는 경우에는, 스페인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하고 고객이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귀국길에 스페인 운송업자의 위탁으로 상품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해 스페인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이러한 운송이 네덜란드 수하인이 수행하는 경우에는, 네덜란드 운송업자는 네덜란드에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 바. 대리인 및 중개업자

중개업자(운송대리인)에 의한 역내 운송 및 운송 동맹 서비스 단체가 수행하는 운송(물류서비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확인 번호를 발급한 국가가 부과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네덜란드 중개상이나 서비스 회사가 독일의 고객의 위탁으로 그의 부가가치세 번호를 가지고 운송을 수행하는 경우, 이러한 서비스는 운송은 프랑스에서 시작되어도 독일에서 과세된다.

#### 사. 신고 / 역내신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다른 여러 회원국에서의 구매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회원국으로 판매한 내용도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거래의 순가액이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부가가치세 관련 의무가 있는 이러한 당사자들도 매년 말에 각국의 회계 기관에 모든 역내 거래의 분기별 명세서(역내 신고)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공급자와 구매자들은 분기별로 자신들이 다른 회원국으로 공급한(또는 거기에서 수령한) 상품들에 관한 별도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고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보완 자료가 된다. 분기별 신고서에는 다른 회원국에 공급한 모든 개별 재화와 용역이 명기되어 있어야 하고, 또한 각 회원국에 있는 공급자와 구매자의 이름과 부가가치세 확인번호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이들 거래의 가액, 중량 및 수량도 명기하여야 한다.

### 아. 벌금

유럽연합 지침에는 위반과 관련된 벌금 규정은 없다. 규정 위반의 경우에는 국가별 규정이 적용된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거래에 관여하는 쌍방이 벌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판매세 납부 의무가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네덜란드는 법적 의무나 상호 협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회원국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국내 공공기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도 철저한 비밀보호조치를 취한다.

### 자. 소비세

소비세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은 광물류, 주류 및 담배와 관련된 세제를 확립해 놓고 있다. 유럽연합 전역에서 적용되는 최소한의 세율을 책정하였다. 재화와 용역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회원국들도 다른 상품에 대한 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다.

## 5. 유예제도

일반적으로 수입시에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수입 회사에게 현금 흐름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수입신고서 제출시 납부되어야 하나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전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회원국에서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시점과 이를 완전히 정산하는 시점 사이에 3개월 이상의 시차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시차는 실제적인 환급이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발생하는 경우에는 더 커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국세청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해주기까지 추가로 최대 3개월이 더 소요될 수 있다.

유럽연합에서 물류 중심 국가로서 특별한 위상을 구축한 네덜란드는 소위 유예제도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정기 부가가치세 신고 때까지 완전히 납부를 유예시켜주는 것이다. 이 제도로 인해 수입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수입시에 납부하지 않고 정기 부가가치세 신고 때까지 유

예되는 상황이 조성되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지만 동일한 신고서상으로 공제 받을 수가 있다. 따라서 동일한 신고서상에서 가감이 이루어져 현금 흐름을 양호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유예제도를 활용하려면 기업이 네덜란드에서 국내 사업자로 또는 상주 기반을 가지고 있는 외국 기업체로 부가가치세 등록을 하여야 하며 네덜란드로 주기적으로 수입하여야 한다.

외국기업이 네덜란드에 상주 기반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네덜란드에 있는 부가가치세 회계 대리인을 통해 협력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회계대리인도 외국 기업의 수입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유예제도를 확보할 수 있다.

## 6. 공급지 규정

공급지 규정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여기에 따라 어느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결정되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부가가치세는 네덜란드에서 제조된 물품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 가. 공급지/ 재화와 용역의 취득

일반적으로 재화와 용역의 공급지는 해당 재화가 공급 시점에 위치해 있는 장소를 말한다. 재화가 공급과 관련하여 (예를 들면 다른 나라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공급지는 운송이 시작된 곳을 말한다. 재화가 네덜란드에서 어느 제3국으로 (예를 들어,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나라로) 수출되는 경우, 공급은 네덜란드에서 발생하지만, 이는 수출이기 때문에 영세율 적용을 받아 네덜란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수출업자는 매입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네덜란드에서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 있는 부가가치세 등록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상품은 기술적으로 수출이 아니라 역내 공급으로 인식된다. 이것도 역시 네덜란드에서 영세율을 적용받지만, 해당 고객은 자신이 있는 회원국에서 상품을 취득한데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것은 the & quotreverse charge라고 하는 절차서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다.

서비스의 공급지는 서비스 공급자가 조직을 설립하고 있는 곳이 된다.

그러나 이 규정에는 상당히 많은 예외 조항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공정을 포함하여 유동재화에 대한 작업과 관련한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의 공급지는 서비스가 실제로 일어난 곳이지만, 여기에도 역내거래에 대한 중요한 예외 조항이 있다. 이것은 유동 재화가 가공을 위하여 A회원국에서 B회원국으로 이동된 후 다시 A회원국으로 반환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공급지는 B회원국이며 서비스의 공급자는 고객에게 B회원국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그러나 고객이 다른 회원국에 (예를 들어, A회원국에) 부가가치세 등록이 되어 있고 공급자에게 자신의 부가가치세 등록 확인 번호를 제공하면, 공급지가 고객이 있는 회원국(A회원국)이 된다. 이 경우 공급지는 B회원국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고객은 아래에 설명되어 있는 역부과 규정에 따라 A회원국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 나. 역부과 규정

역부과 규정의 원리는 어떤 공급 행위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공급자로부터 고객에게 이동시키는 것이다. 그 주요 목적은 공급자가 기반이 없는 회원국에서 부가가치세를 등록하고 신고할 필요가 없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것은 특별한 상황에 국한하여 적용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적용되는 경우, 고객은 자신에게 이루어진 공급 가액에 대해 스스로 국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고객의 매출 부가가치세로 처리된다. 동시에 이 고객은 동일한 금액을 매입 부가가치세로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며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이러한 공제는 면세물품이 만들어졌을 때의 매입세 환급 제한과 통상적인 부가가치세 규정에 따라야 한다.

역부과 신청은 네덜란드에서는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 네덜란드 국적이 아닌 기업이 네덜란드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이는 네덜란드 부가가치세의 적용을 받으며, 이에 따라 고객에게 해당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그러나 고객이 네덜란드에 기반을 두고 있는 법인인 경우, 역부과가 적용된다.







## Ⅵ. 국제조세

1. 조세회피법칙
2. 이전가격
3. 과소자본 규정
4. 외국법인 지점의 과세
5. 외국 피지배 회사
6. 이중과세방지
7. 네덜란드의 APA 신청 절차에 대하여
8. 외국 근로자들을 위한 네덜란드의 30% Ruling  
(30% 비과세제도)
9. 조세조약



## VI. 국제조세



### 1. 조세회피법칙

서로 다른 일반적인 조세회피방지 규칙이 있다. 즉 정당한 부과 절차와 법원칙의 남용이다. 실제에는 법원칙의 남용이 더 효과적이라고 간주되기 때문에 그것만이 사용된다. 법원칙의 남용에 근거하여 조세당국은 다음 조건이 만족된다면 합법적인 거래 또는 그 범주의 거래를 무시할 수 있다.

- (1) 거래계약에 대한 원칙적 동기가 조세회피인 경우
- (2) 거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납세자가 조세입법의 의무와 목적을 위반하는 경우

그러나 모회사와 자회사간 거래가 있는 곳에서 그러한 거래가 독립기업의 원칙에 근거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간주되면 비과세 자본기부금 또는 비공제이익 분배금이 추정된다. 그러한 분배는 또한 배당금에 대한 원천세가 적용된다(배당금은 조세협약에 의해 감소한다) 세무행정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전가격에 대해 선행규칙을 제공할 수 있다. 게다가, 납세자는 요청에 의해 관계 당사자간 국제거래 이전가격을 고정시키는데 양측간 합의를 획득할 수 있다.

네덜란드 모회사는 조세당국에게 지분의 50%이상을 소유한 비거주자인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네덜란드 자회사는 조세당국의 요청에 의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50%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비거주 주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한 의무는 주주가 유럽연합 또는 정보규정의 적절한 교환을 포함한 조세협약을 네덜란드와 맺은 국가의 거주자일 때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외국 세무행정과의 협의에 의해 세무당국이 정보를 얻을 수 없다면 네덜란드 자회사는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 2. 이전가격

네덜란드 법인세법에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사내 가격 책정은 제3자 거래가격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내 가격 책정에 관한 지침은 OECD 조세협정모델 및 OECD 이전가격 책정 지침에 수록되어 있는 사내가격책정에 관한 제3자 거래가격 원칙에 따라 규정된 것이다.

그룹 금융 회사 및 특허권 보유 회사를 포함한 그룹내 금융 서비스 회사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과 지침이 정해져 있다. 대개의 경우 이전가격 책정에 대해서는 사전 과세 통칙을 취득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법인세 계산-관련 당사자들과의 거래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 및 사전 과세통칙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들도 참조하기 바란다.

## 3. 과소자본 규정

2004.1.1.부로 관련 당사자 대출금에 대한 이자 비용(및 기타 비용)이 네덜란드 회사의 대출 조달액이, 일정 비율로 초과하는 수준까지 허용하지 않는 과소자본 규정이 도입되었다. 최대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3:1인데, 즉 평균 대출 조달액이 회사의 평균 자본 조달액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비율을 적용하여 그룹간 대출 및 제3자 대출을 모두 판단하여야 하나, 자본 대비 부채 비율 적용을 위해서는 순대출(부채에서 외상대출금 공제 후) 금액만 부채로 간주한다.

대출액이 이 3:1 한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룹 대출액에 대해 지불한 이자의 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단, 다음과 같은 예외조항 중 하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대출금 초과금액이 연간 €500,000를 초과하지 않으면 이자의 세액 공제에 대해 전혀 제약이 가해지지 않는다(면책비율).
2. 네덜란드 납세자가 자체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자신이 속해있는 그룹의 자본 대비 부채비율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자는 공제를 받는다(물론 다른 어떠한 제약조건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임).

순수한 제3자 대출(예를 들면 은행 대출)에 대한 이자 공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 4. 외국법인 지점의 과세

네덜란드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 지점의 과세대상 소득은 지주회사의 과세대상소득과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된다. 제3자로부터 발생된 지점관련 비용은 과세대상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다. 본점에 지불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는 없다.

#### 5. 외국 피지배 회사

외국 피지배회사에 관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법률 평가 규칙을 통해서 비거주회사의 특정 참여지분의 공정한 시장가격의 년별 증감은 거주회사의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비거주회사 자산의 50%이상의 직·간접적으로 포트폴리오 투자 또는 수동적 재무기업군의 재무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비거주회사 자본의 25%이상의 참여자본에 대해 이 규정이 적용된다.

#### 6. 이중과세방지

외국원천소득은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그러나 다음의 외국원천소득에 대해 단독적인 방지가 승인된다.

- (a) 계약을 맺을 권한이 있는 해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종속회사로 부터의 수입
- (b) 외국에 위치한 부동산으로 부터의 소득
- (c) 외국에서 경영활동을 하고 외국원천소득이 그 외국의 국내 수준에 따른 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면 조세협약이 소득의 종목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기업이익에 대한 권리(채권과 주권

포함).

백분율에 의한 과세액의 감소 형태가 범국제적인 소득을 포함한 해외원천소득의 백분율과 같다면 조세경감이 된다. 동일국가에서 전년에 공제된 외국원천 결손은 조세경감을 감소시킨다.

나아가 배당금(지분참여 공제된 부분제외), 특검 개발국가로부터의 이자와 기술사용료(서비스 수수료 포함)는 조세가 공제된다. 이것들은 소득원천국가의 소득세를 적용한다(원천세 포함). 일반 면세방법에서 주로 수동적 재무기업군 또는 투자지사에서 발생한 소득은 17.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해외지사의 기업군 재무활동의 재무국 장관에 의한 규정에 의해 특정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수동적이 아니다. 조세협약은 결과가 다소 불리하더라도 네덜란드 국내법에 우선한다.

## 7. 네덜란드의 APA 신청 절차에 대하여

네덜란드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한 다수의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네덜란드에 진출한 한국기업들로부터 듣게 되는 네덜란드의 투자환경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 중의 하나로 APA (Advanced Pricing Agreement) 제도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네덜란드에 진출한 일정 규모 이상의 한국기업의 과반수는 네덜란드 과세당국과 APA를 체결하고 있다. 따라서 네덜란드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이 APA를 신청하는 경우의 절차를 살펴보겠다.

### 가. APA 제도

네덜란드 재무성이 2001년 3월 30일 제정한 통칙 IFZ2001/292M에 의하면 APA는 유무형의 자산과 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한 다양한 관계사간 거래를 포함함으로써 네덜란드의 대부분 기업이 이전가격 문제를 APA를 통해 다룰 수 있게 되었다. 원칙적으로 APA는 단독(Unilateral), 양방간(Bilateral) 또는 다자간(Multilateral) APA를 4~5년의 기간 동안 체결 가능하다. 또한 네덜란드의 APA는 특별한 조건하

에서는 소급적용(Retroactive)도 가능하다. APA 신청시 세무당국에 최초 제공해야 할 정보의 양이 상당히 많아 이를 신청하는 기업들이 APA 도입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나, 실제 요구되는 정보의 양과 질은 2002년 1월 발효된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문서화(TP Documentation)에서 기업이 문서화해야 하는 정보의 요구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아 APA 신청에 따른 기업의 추가 부담은 실질적으로 크지 않다. 따라서 네덜란드 진출 한국기업의 Tax Planning과 관련하여 매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 나. APA의 신청

일반적으로 기업이 APA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무당국에 다음의 상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APA 적용을 원하는 대상 거래, 상품, 계약 등
- 적용 기업
- 관할 세무당국
- 네덜란드 주재 기업의 한국 내 본사의 조직 및 지분구조, 연혁, 재무 자료, 주요 상품, 기능, 영업 수행에 따른 위험, 유무형 자산
- 이전가격 결정방법(타 기업과의 비교분석자료 포함)

기업은 객관적인 이전가격 결정방법과 주요 가정 및 가정의 변화에 따른 결과를 기술해야 한다. 하지만 이전가격 결정방법은 시장점유율과 value chain 등의 주요 변수에 따라 사전 확정된 범위 내에서 융통성을 가지고 적용된다. 기업은 또한 관련 회계연도의 재무정보와 시장 상황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를 기술해야 한다. 이러한 자료는 기업이 TP documentation을 통해 구비해야 하는 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APA 적용에 따른 기업의 추가부담은 크지 않으며, 공식적으로 신청서의 내용 및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나 신청서류는 일반적으로 다음 5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 기능 분석(Functional analysis)
- 관계사간 거래와 제안된 이전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설명
- 제안된 이전가격 결정방법이 객관적임에 대한 입증 (비교분석이 일반적으로 사용됨)
- 산업 분석
- 관계사 또는 본사와 신청 기업간의 계약 내용

#### 다. APA의 진행절차

APA의 신청기업이 APA 요청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하면 세무당국은 Rotterdam의 APA 팀의 조언을 득하여 신청서류를 세무당국 내 이전가격 조정그룹에 보낸다. 양방간 APA의 경우 신청서류 사본은 상대 과세당국에 보내지게 된다. 이후 기업은 Rotterdam APA팀과 pre-filing 미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미팅에서 실제 filing과 관련한 사전 논의 사항들이 점검된다. 이러한 Pre-filing 미팅은 기업의 향후 공식 서류제출과 관련된 행정비용을 절감해주는 장점이 있다. 특히 APA팀과 신청기업은 공동 업무계획을 수립함으로써 APA 최종 승인까지의 시간을 절약해주고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있다.

#### 라. APA 신청 실무 및 장점

네덜란드의 많은 한국기업이 APA를 적용하여 세무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다양한 이전가격 결정방법이 허용되는 것이 장점이다. 한국기업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전가격 결정 방법 중의 하나는 원가가산방식(Cost Plus Method)으로 기업의 연간 발생 원가에 근거하여 세무당국과 합의된 Mark-up rate를 적용하여 산출된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특히 본사가 대부분의 영업위험을 부담하는 물류, 서비스,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기업들에 적합한 방식이다. 한국기업들에 대한 APA 서비스 경험에 비추어볼 때, 한국기업이 성공적인 APA 획득을 위해서는 한국기업에 APA 신청업무의 제공경험이 풍부한 세무 컨설팅 회사를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2007년 현재까지 네덜란드 내 한



국기업의 APA 신청 및 획득 업무는 대부분 PwC 이진가격 팀에 의해서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 8. 외국 근로자들을 위한 네덜란드의 30% Ruling (30% 비과세제도)

30% 비과세 제도는 네덜란드로 파견되었거나 해외에서 채용되어 네덜란드에 근무하는 근로자 및 소위 '역외적용 근로자'라고 부르는 특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네덜란드 근로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종의 세금 특혜이다. 이러한 특혜가 인정되면 해당 고용주는 근로자 임금의 최대 30%까지 정액 면세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30%의 면세 수당은 근로자가 본국이 아닌 곳에서 근로한다는 사실 때문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인 역외적용 비용을 충당해주기 위한 것이다. 30% 비과세 제도는 네덜란드에서 한국의 다국적 기업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도 아주 유리한 규정이다. 충족되어야 할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 가. 일반 사항

30% 비과세 제도는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된다. 네덜란드 거주 기업 (즉, BV (개인 유한책임 회사) 또는 NV (법인 유한책임 회사))의 임원들도 해당 회사가 자신의 개인 회사라 하더라도 30% 비과세 제도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또한 30% 비과세 제도는 업무는 (실제적으로) 네덜란드에서 수행되지 않지만 소득에 대해 네덜란드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도 적용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반드시 네덜란드의 거주자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

### 나. 해외에서 입국

근로자가 네덜란드로 파견되어야 하거나 해외에서 채용되어야 한다.

### 다. 네덜란드 급료 지불 명부에 등재

이 제도를 신청하려면 급료 지불 명부를 처리하는 네덜란드 원천징수 대리인,

즉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에서 근로소득세 (및 해당될 경우 사회보장 분담금)을 공제한 후 이를 네덜란드 세무 당국에 납부하는 대리인이 있어야 한다.

#### 라. 특정 전문기술/희소성

근로자는 네덜란드 노동 시장에서 전혀 확보할 수 없거나 또는 거의 확보할 수 없는 희소성이 있는 특정 전문기술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한다. 고용주는 교육 수준, 근무 경력, 전문기술 등 규정된 수준을 갖춘 사람이 해외에서가 아니라면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직무 순환'제도에 따라 네덜란드에서 근로하게 될 예정이고, 또한 네덜란드 이외의 지역에서 동일 그룹 회사에서 최소한 2.5년 이상 근무한 중간 이상의 직위에 있는 근로자는 이러한 특정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 마. 근로자 및 고용주 양자의 요청

이러한 30% 비과세 제도는 근로자 및 고용주가 공동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 받을 수 있다. 이 신청서는 해당 근로자가 역외적용 근로자로 근무를 개시한 이후 4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바. 고용 계약서

30% 비과세 제도를 적용 받으려면 고용주와 근로자는 근로자의 총 급여 외에 급여의 약 30%에 해당하는 역외적용 비용에 대한 별도의 면세 수당을 지급할 것이라는 내용을 (서면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이 30%의 수당은 현재의 취업에 따른 (과세 대상) 소득에 30%의 수당을 합한 총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사. 최대 기간은 10년

이러한 비과세 제도는 해당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기술이 계속해서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한 최대 10년의 기간 동안 적용되며, 이러한 특혜는 항상 최소한 5년의 기간 동안 적용 받을 수 있다. 30% 비과세 제도 적용 개시 후 5년이 지나면 고용주는 네덜란드에서의 체재 연장이 필요하

다는 것을 세무 당국이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러한 비과세 제도는 10년 동안 적용받을 수 있다.

## 9. 조세조약

### 가. 2007년 현재 조세조약 체결현황 및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Withholding-tax rates on dividends under Dutch double-tax treaties, 2007 (%) \*

| Country of recipient | General | Reduced | Country of recipient | General | Reduced   |
|----------------------|---------|---------|----------------------|---------|-----------|
| Albania              | 15      | 0/5     | Malawi               | 15      | 0         |
| Argentina            | 15      | 10      | Malaysia             | 15      | 0         |
| Armenia              | 15      | 0/5     | Malta                | 15      | 0/5       |
| Australia            | 15      | 15      | Mexico               | 15      | 0         |
| Austria              | 15      | 0       | Morocco              | 25      | 10        |
| Bangladesh           | 15      | 10      | Netherlands Antilles | 15      | 5/7.5/8.3 |
| Barbados             | 15      | 15      | New Zealand          | 15      | 15        |
| Belarus              | 15      | 0/5     | Nigeria              | 15      | 12.5      |
| Belgium              | 15      | 0/5     | Norway               | 15      | 0         |
| Bosnia               | 15      | 5       | Pakistan             | 20      | 10        |
| Brazil               | 15      | 15      | Philippines          | 15      | 10        |
| Bulgaria             | 15      | 5       | Poland               | 15      | 0/5       |
| Canada               | 15      | 5       | Portugal             | 10      | 0/10      |
| China                | 10      | 10      | Romania              | 15      | 0/5       |
| Croatia              | 15      | 0       | Russia               | 15      | 5         |
| Czech Republic       | 10      | 0       | Singapore            | 15      | 0         |
| Denmark              | 15      | 0       | Slovakia             | 10      | 0         |
| Egypt                | 15      | 0       | Slovenia             | 15      | 5         |
| Estonia              | 15      | 5       | South Africa         | 15      | 5         |
| Finland              | 15      | 0       | South Korea          | 15      | 10        |

Withholding-tax rates on dividends under Dutch double-tax treaties, 2007 (%) \*

| Country of recipient | General | Reduced | Country of recipient              | General | Reduced |
|----------------------|---------|---------|-----------------------------------|---------|---------|
| France               | 15      | 0       | Spain                             | 15      | 5       |
| Georgia              | 15      | 0/15    | Sri Lanka                         | 15      | 10      |
| Germany              | 15      | 0       | Surinam                           | 20      | 7.5/15  |
| Greece               | 15      | 0       | Sweden                            | 15      | 0       |
| Hungary              | 15      | 5       | Switzerland                       | 15      | 0       |
| Iceland              | 15      | 0       | Thailand                          | 25      | 5       |
| India                | 15      | 10      | Tunisia                           | 20      | 0       |
| Indonesia            | 10      | 10      | Turkey                            | 20      | 5       |
| Ireland              | 15      | 0       | Ukraine                           | 15      | 0/5     |
| Israel               | 15      | 5/10    | United Kingdom                    | 15      | 0       |
| Italy                | 15      | 0/5/10  | United States                     | 15      | 0/5     |
| Japan                | 15      | 5       | United Arab Emirates <sup>b</sup> | 10      | 5       |
| Jordan <sup>a</sup>  | 15      | 5       | Uzbekistan                        | 15      | 5       |
| Kazakhstan           | 15      | 0/5     | Venezuela                         | 10      | 0       |
| Kuwait               | 15      | 0       | Vietnam                           | 15      | 5/7/10  |
| Latvia               | 15      | 5       | Yugoslavia <sup>c</sup>           | 15      | 5       |
| Lithuania            | 15      | 5       | Zambia                            | 15      | 5       |
| Luxembourg           | 15      | 0       | Zimbabwe                          | 20      | 10      |
| Macedonia            | 15      | 0/15    | Other countries                   | 15      | —       |

\* Where multiple rates are shown, these apply to different levels of share ownership or to different classes of recipients.

## 나.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본문

1981. 4. 11 조약 제740호

1978년 10월 25일 서울에서 서명

1981년 4월 17일 발효

### 제1조 【인적범위】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 제2조 【대상조세】

(1)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3) 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네덜란드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임금세

(3) 법인세

(4) 배당세

(이하 “네덜란드의 조세”라 한다)

(2) 이 협약은 앞으로 현행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또는 현행조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각국세법에서 실질적으로 개정된 부분을 상호통지한다.

## 제3조 【용어의 정의】

- (1) 이 협약에 있어서 아래의 용어들은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한, 각각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 (가) “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네덜란드를 의미한다. “국들”이라 함은 한국과 네덜란드를 의미한다.
- (나) “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을 의미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국의 조세에 관한 법이 효력을 가지는 모든 영역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또는 영해와 해저지역의 자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를 목적으로 국제법에 따라 한국이 주권적권리를 행사하는 영해밖의 한국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를 포함한다.
- (다) “네덜란드”라 함은 유럽에 위치한 네덜란드왕국과 국제법에 따라 네덜란드왕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북해의 해상과 하층토를 포함한다.
- (라) “인”이라 함은 개인, 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 (마)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의미한다.
- (바) “일방국의 기업” 및 “타방국의 기업”이라 함은 일방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각각 의미한다.
- (사) “국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 (1) 일방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
  - (2) 일방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법인조합 및 기타 단체
- (아)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 (1) 한국에서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
  - (2) 네덜란드에서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
- (자) “조세”라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네덜란드의 조세를 의미한다.
- (2) 어느 일방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달리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대상조세에 관련된 그 일방국의 법에 내포되는 의미를 가진다.

**제4조 【과세상의 주소】**

- (1) 이 협약의 목적상“일방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의 법에 의하여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그가 동국의 원천으로부터 소득을 취득한다는 이유만으로 해서 동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되지 아니한다. “타방국의 거주자”, “한국의 거주자” 및 “네덜란드의 거주자”의 용어는 이에 따라 해석된다.
- (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 (가) 동개인이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주거를 두고 있는 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개인이 양국내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관계가 더 밀접한 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 (나) 동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주거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일상적거소를 두고 있는 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 (다) 동개인이 양국내에 일상적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국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국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 (라) 동개인이 양국의 국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 (3) 상기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것이 관리되고 지배되는 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제5조 【고정사업장】**

- (1) 이 협약의 목적상“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가) 관리장소
  - (나) 지 점

- (다) 사무소
- (라) 상점 또는 판매장소
- (마) 공장
- (바) 작업장
- (사) 광산, 유전 또는 개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소
- (아)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 또는 건설, 설비 또는 조립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기술 또는 전문적용역과 같은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활동
- (3) “고정사업장”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가)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보관전시 또는 인도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 (나)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 (다) 타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 (라) 그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의 목적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 (마) 그 기업을 위한 광고목적정보의 제공 과학적조사 또는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가지는 유사한 활동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 (4) 5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이외에 일방국에서 타방국의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은 그가 일방국에서 그 기업의 명의로 계약체결권을 가지며 또한 동권한을 관례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일방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그의 활동이 동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 (5) 일방국의 기업이 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기업은 동타방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6) 일방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로 어느 법인이 타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한다.

### 제6조 【부동산소득】

- (1) 부동산소득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이 소재하는 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재산이 소재하는 국의 법에 따라 정의된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 및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 및 설비, 토지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에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그리고 광상, 광천 및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의 불확정적인 또는 확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 (3) 상기 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 임대 또는 기타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
- (4) 상기 1항 및 3항의 규정은 또한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된 소득과 전문적용역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제7조 【사업소득】

- (1) 일방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의 타방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기업이 상기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중 동고정사업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 (2) 일방국의 기업이 타방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고정사업장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동고정사업장을 가진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를 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는, 동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국내에서 동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고정사업장을 위해서 발생한 경비는, 동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 (4) 고정사업장이 당해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입한다는 이유로는 어떠한 이윤도 동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 (5)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제조항에서 별표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제조항의 규정은 본조의 규정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제8조 【해운 및 항공운수】

- (1) 일방국의 기업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으로부터 얻는 이윤은 타방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 (2) 상기 1항은 공동계산, 공동경영 또는 국제경영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제9조 【특수관계기업】

- (가) 일방국의 기업이 타방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 (나) 동일인이 일방국의 기업과 타방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자금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에, 동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나 동조건으로 인하여 그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동기업의 이윤에 가산하여 이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 제10조 【배당】

- (1) 일방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동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에서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 (가) 배당수취인이,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분으로 나누어지고 배당을 지불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총배당액의 10퍼센트
- (나) 기타의 경우는 총배당액의 15퍼센트
- (3) 상기 2항의 규정은 동배당의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4) 본조에서 사용된 “배당”이라 함은 주식, 향익권 발기인주 또는 이윤에 참여하는 채권이 아닌 기타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그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국의 세법에 의하여 주식에서 생기는 소득과 같이 취급되는 기타 지분으로부터의 소득을 의미한다.
- (5) 상기 1항 및 2항의 규정은 일방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취인이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타방국내에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실질적으로 관련이 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 (6)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국으로부터 이윤이나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타방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타방국은 동법인에 의하여 타방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또한 동법인의 유보이윤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이 되게 할 수 없다.

**제11조 【이자】**

- (1) 일방국에서 발생하고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이자는 그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국에서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 (가) 7년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차관에 대하여 지급된 이자의 경우 그 이자의 총액의 10퍼센트
  - (나) 기타의 경우에는 그 이자총액의 15퍼센트
- (3) 본조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국에서 발생하고 타방국의 정부또는 지방공공단체, 그 타방국의 중앙은행, 또는 그 정부나 그 중앙은행 또는 그 양자가 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관(금융기관을 포함)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동일방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 (4) 본조에서 사용된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익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정부발행 유가증권, 공채 또는 사채와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의 소득 및 그 소득이 발생한 국가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취급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 (5) 상기 제1항 및 2항의 규정은 일방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취인이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국내에 이자의 발생원인이 되는 채권이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 (6) 이자는 그 지급인이 일방국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일방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일방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를 지급하는 인이 일방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그 일방국내에 그 이자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이자가 그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이 있는 국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 (7) 지급인과 수취인간 또는 그 쌍방과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의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을경우 지급인과 수취인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이자의 초과부분은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각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

- (1) 일방국에서 발생하고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사용료는 그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 (가) 3항 세항 (가)에 규정된 사용료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
  - (나) 3항 세항 (나)에 규정된 사용료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 (3)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 (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과학작품의 저작권
  - (나)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

- (4) 일방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한 타방국내에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기1항 및 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 (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국가 자신. 그의 정치적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일방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를 지급하는 인이 일방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동일방국내에 사용료의 지급근거가 되는 체결된 계약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용료가 동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동고정사업장이 있는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 (6) 지급인과 수취인간, 또는 그 쌍방과 제3자간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 사용료가 지급된 근거가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하여 볼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취인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 사용료중 초과부분은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각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제13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의 제한】**

일방국에 체재하는 국제기구, 기관 및 이와같은 기구나 기관의 직원과 제3국의 외교 또는 영사사절단원은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취급된 것으로 타방국에서 발생한 소득항목에 대한 동조에 규정된 조세의 감면을 동타방국에서 받을 권리가 없다. 다만, 이와같은 소득항목이 그 일방국에서 소득에 관한 조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제14조 【양도소득】**

- (1) 제6조 2항에 규정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얻은 이득은 그 부동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될 수 있다.
- (2) 일방국의 기업이 타방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나 자유직업적인 용역의 수행상 타방국내 있는 일방국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

한 소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이나 고정된 장소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그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 (3) 상기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와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되는 이득은 동일방국에서만 과세된다.
- (4) 상기 1항, 2항 및 3항에 규정된 재산 이외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에서만 과세된다.
- (5) 제4항의 규정은 타방국의 거주자이며 또한 주식이나 향익권의 양도전에 최근 5년중 일방국의 거주자이었던 개인이 일방국의 거주자이고 자본금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주식으로 나누어진 법인의 주식이나 향익권을 양도함으로써 취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자국법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는 일방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5조 【독립적인적용역】**

- (1) 일방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자유직업적인 용역이나 이와 유사한 성격의 다른 독립적활동과 관련하여 취득된 보수는 동일방국에서만 과세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한 소득은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 (가) 그가 그의 활동수행상 그 타방국내에 그에게 정기적으로 사용되는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 (나) 그가 과세연도중 합계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총계기간동안 타방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 (2) “자유직업적인 용역”이라 함은 특히 독립적인 과학,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은 물론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활동을 포함한다.

**제16조 【종속적인적용역】**

- (1)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되는 급여, 임금과 기타 유사한 보수는 그 고용이 타방국내에서 수행되지 않는 한, 그 일방국에서만 과세된다. 만약, 그 고용이 타방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는 동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 (2) 상기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국내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되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그 일방국에서만 과세된다.
  - (가) 그 수취인이 당해과세연도 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타방국내에 체재하며,
  - (나) 그 보수가 타방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거나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
  - (다) 그 보수가 그 고용주가 타방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해서 부담되지 않는 경우
- (3) 본조 상기 제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되는 보수는 동일방국에서만 과세된다.

**제17조 【임원의 보수】**

- (1) 네덜란드의 거주자에 의하여 한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임원의 자격으로 취득되는 보수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지급금은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 (2) 한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네덜란드의 거주자인 법인의 임원(베스트루르더 또는 코미싸리시)의 자격으로서 취득되는 보수 및 기타 지급금은 네덜란드에서 과세될 수 있다.

**제18조 【연예인 및 운동가】**

- (1) 제5조, 제7조,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배우나 음악가 등의 연예인과 운동가가 그들의 인적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 또는 기업의 그러한 연예인 또는 운동가의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취득되는 소득은 그 활동이나 용역이 수행되는 국가에서 과세될 수 있다.
- (2) 상기 1항의 규정은 연예인 또는 운동가의 일방국방문이 전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타방국의 정부,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공기금에서 지원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9조 【연금 및 보험연금】**

- (1) 본조의 2항과 제20조의 1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국의 거주자에게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한 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와 그러한 거주자에게 지급된 보험연금은 동일방국에서만 과세된다.
- (2) 그러나, 이와같은 소득은 그 소득이 타방국의 기업이나 또는 타방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기업에 의하여 타방국에서 발생된 이윤에서 공제되는 한 동타방국에서 또한 과세될 수 있다.
- (3) 일방국의 사회보장제도의 규정에 의하여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그 일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 (4) “보험연금”이라 함은 금전이나 금전적 가치의 적절하고도 충분한 보상의 대가로서 지급하여야 할 의무에 따라 일생동안이나 특정된 또는 확정할 수 있는 기간동안 소정의 시기에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소정의 금액을 의미한다.

**제20조 【정부기능】**

- (1) 일방국, 그 정치적하부조직 또는 그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에서 정부기능의 수행상 그 일방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포함한 보수는 그 일방국에서만 과세된다. 그러나 그 용역이 타방국의 거주자인 국민이 그 일방국의 국민이 아닌 그러한 개인에 의하여 타방국에서 일방국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보수는 동타방국에서만 과세된다.
- (2) 제16조,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은 일방국, 그 정치적하부조직 또는 그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영위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관련된 보수 또는 연금에 적용된다.

**제21조 【교수 및 교직원】**

- (1) 타방국을 방문할 당시 일방국의 거주자이며, 타방국의 정부 또는 그 타방국 내에 있는 대학교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대학교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일차적으로 강의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또는 강의와 연구의 양자를 위한 목적으로 그 타방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그가 그 타방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그러한 강의 또는 연

구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 동타방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 (2) 본조의 규정은 그러한 연구가 일차적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인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연구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22조 【학생】

(1) 일방국을 방문하기 직전타방국의 거주자이고,

(가) 타방국내의 인가된 대학교, 대학 또는 학교에서의 수학, 또는

(나) 사업견습생으로서의 연수를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여 일시적으로 그 일방국에 체재하는 개인은 다음에 대하여 동일방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 (1) 동개인의 생계, 교육 또는 훈련목적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모든 송금, 또한
- (2) 동일방국에서 수행된 인적용역에 대한 어떤 과세연도중 5,000 네덜란드 길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한국 원화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보수

본항의 혜택은 그 방문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합리적이고 관례적인 기간동안에만 허용된다.

(2) 일방국을 방문하기 직전 타방국의 거주자이며, 또 학문, 교육, 종교나 자선단체로부터, 또는 일방국, 그 정치적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시행되는 기술지원계획에 의하여 지급되는 교부금, 수당 또는 장려금의 수취인으로서 연구, 조사 또는 훈련목적만으로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일방국에서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개인은 다음에 대하여 그 일방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가) 그러한 교부금, 수당 또는 장려금

(나) 동개인의 생계, 연구, 조사 또는 훈련목적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모든 송금, 또한

(다) 용역이 동개인의 연구조사 또는 훈련과 관련되거나 이러한 활동에 부수되는 경우에는, 그 일방국에서 수행된 인적용역에 대한 보수로서 과세연도 중 5,000네덜란드 길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한국의 원화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3) 일방국을 방문하기 직전 타방국의 거주자이며 또 타방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타방국기업의 고용인으로서 또는 이들과의



계약에 의하여 기술상, 전문직직업상 또는 사업상의 경험을 습득하기 위하여 12개월을 초과하지않는 기간동안 일방국에서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개인은 다음에 대하여 그 일방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 (가) 동개인의 생계, 교육 또는 훈련목적을 위한 타방국으로부터의 모든 송금
- (나) 용역이 동개인의 연구, 조사 또는 훈련과 관련되거나 이러한 활동에 부수되는 경우에는 그 일방국에서 수행된 인적용역에 대한 보수로서 과세연도 중 15,000네덜란드길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한국의 원화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그러나 본항의 혜택은 만약 피고용인이나 계약근로자가 회사의 의결권주의 50% 이상이 그 피고용인이나 계약근로자를 파견한 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 또는 기업에 의하여 소유되고 있는 회사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그 피고용인이나 계약근로자가 단지 기술상, 전문직직업상 또는 사업상의 경험을 습득할 목적으로 파견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는한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3조 【이중과세방지】**

- (1) 네덜란드는 그의 거주자에게 조세를 부과할 경우 이와 같은 조세가 부과되는 과세표준에 본협약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 (2) 네덜란드는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일방적인 규정에 있어서의 손실보전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대한 본조 제1항에 따라서 산출된 세액으로부터, 그 산출세액중 기득권을 저해하지않고 본조 제1항에 말한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본 조약의 제6조, 제7조, 제10조, 제5항, 제11조 5항, 제12조 4항, 제14조 1, 2항 제15조, 제16조 1항, 제17조 1항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부분이 본조 1항에서 말한 과세표준을 형성하는 총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액의 공제를 허용한다.
- (3) 또한 네덜란드는 본조의 전항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으로부터, 제10조 2항, 제11조 2항, 제12조 2항, 제18조 및 제19조 2, 3항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되고 본조의 1항에서 말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소득항목에 대하여 공제를 허용한다. 본공제의 금액은 다음의 금액을 적은 것으로 한다.
  - (가) 한국조세와 동등한 금액

- (나) 본조 1항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중 상기소득항목의 금액이 본조 1항에서 말한 과세표준을 형성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네덜란드의 세액
- (4) 한국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조세경감때문에 제10조 2항의 세항 나)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배당에 실제로 부과된 한국 조세가 동조항규정에 의하여 한국이 부과할 수 있는 조세보다 낮은 경우, 동배당에 대하여 본조 3항 세항 가)에서 말한 한국조세와 동등한 금액은 배당총액의 15퍼센트인 것으로 간주된다.
- (5) 한국외자도입법 또는 실질적 유사한 여타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조세 경감 때문에 한국에서 발생하는 제11조 2항 세항 가)에서 말한 이자 또는 제12조 2항 세항 나)에서 말한 사용료에 실제로 부과된 한국조세가 동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 부과할 수 있는 조세보다 낮은 경우 동소득항목에 대한 본조 3항 세항 가)에서 말한 한국조세와 동등한 금액은 한국이 실제로 부과한 조세액과 이러한 이자 및 사용료의 총액의 10퍼센트와의 차액을 2배하여 계산한 금액을 앞에서 말한 실제로 부과한 조세액에 가산한 금액인 것으로 간주된다.
- (6) 한국은 한국의 거주자에게 네덜란드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적절한 조세액을 한국조세로부터 공제토록 하여준다. 그 적절한 금액은 네덜란드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조세액을 기초로 하되 본협약의 규정에 따라 네덜란드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이 한국의 조세가 부과되는 전체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조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제24조 【무차별】

- (1) 일방국의 국민은 그들이 동일방국의 거주자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타방국에서 동일한 사정하에 있는 동타방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또는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른 또는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2) 일방국의 기업이 타방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는 동일한 활동에 종사하는 동타방국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동타방국내에서 불리하게 과세되지 아니한다. 본규정은 일방국에 대하여 그 일방국의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의 인적공제, 면제 및 경감을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여

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 (3) 그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방국의 1인 또는 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고 있는 일방국의 기업은 동일방국내에서 동일방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부담할지라도 모든 조세와 이에 관련된 요건 이외의 다른 또는 더 많은 조세 또는 이에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4) 본조에서 “조세”라 함은 모든 종류의 조세를 의미한다.

#### 제25조 【상호합의의 절차】

- (1) 일방 또는 양국의 과세처분이 일방국의 거주자에 대하여 이 협약에 의거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것으로 동거주자가 간주하는 경우에, 동거주자는 양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된 구제절차에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로 되어있는 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사안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2) 그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또한 그 권한있는 당국이 스스로 적절한 해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의거하지 아니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 (3)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 또는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그들 양당국은 또한 본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상호협의를 할 수 있다.
- (4)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할 목적으로 상호간에 직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 제26조 【정보교환】

- (1)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시행 특히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그 권한있는 당국이 그들의 의사에 따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그렇게 교환된 정보는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범정을 포함하여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또는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련한 소원의 결정에 관련된 자 이외의 여

하한 인이나 또는 당국에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 (2) 상기 1항의 규정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어느 일방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지게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 (가) 그 일방국 또는 타방국의 법 또는 행정상의 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상의 조치를 집행하는 것
  - (나) 그 일방국 또는 타방국의 법에 의하여 또는 행정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얻을 수 없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
  - (다) 영업상, 사업상, 산업상 또는 전문적 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 제27조 【외교관 및 영사관】

이 협약의 어느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규정에 의거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의 과세상의 특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제28조 【적용영역】

- (1) 이 협약은 그대로 또는 필요한 수정을 가하여, 만약 네덜란드엔틸레스가 이 협약이 적용되고 있는 조세와 그 성질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네덜란드엔틸레스에도 적용이 확대될 수 있다. 그러한 적용의 확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교환된 각서에서 명시되고 합의되는 그러한 일자로부터, 그리고 종료에 관한 조건을 포함한 그러한 수정과 조건에 따를 것을 전제로 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 (2)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본협약의 종료는 네덜란드엔틸레스에 대한 협약의 여하한 확대 적용을 자동적으로 종료시키지 않는다.

#### 제29조 【발효】

- (1)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헤이그에서 가능한한 조속히 교환된다.
- (2) 이 협약은 비준서의 교환일로부터 15일째되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적용한다.
  - (가)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역년의 1월 1일 이후에 대기되거나 지급될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조세

(나)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역년의 직전역년의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에 부과되는 조세 및 기타 조세

### 제30조 【종 료】

(1) 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진다. 어느 일방국은 발효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한후 개시되는 어떤 역년말로부터 최소한 6개월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한 종료통고를 함으로써 본협약을 종료시킬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본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가) 종료통고가 있는 역년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 이후에 대기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조세

(나) 종료통고가 있는 역년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에 부과되는 조세 및 기타 조세

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히 위임받은 양국의 대표가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78년 10월 25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네덜란드왕국정부를 위하여

## 다. 의 정 서

금일 대한민국과 네덜란드왕국간에 체결된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을 서명함에 있어서 대표자는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다음 규정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 1. 제2조에 관하여

본 협약의 제2조 제1항 세항 나)에 관하여,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하여 부과되는 한국의 방위세는 또한 본 협약의 대상조세임을 양해한다.

2. 제10조에 관하여

제10조 2항 세항 가)의 규정은, 네덜란드의 거주자인 법인이 한국의 거주자인 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에 대하여 네덜란드법인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10조 2항 세항 나)의 규정이 적용된다.

3. 제10, 11조 및 12조에 관하여

양국의 관계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제10조 2항, 제11조 2, 3항 및 제12조 2항의 적용방법을 결정한다.

4. 제10, 11조 및 12조에 관하여

제10, 11조 및 12조의 규정에 반하여 부과된 조세의 환부신청은 동 조세를 부과한 국의 관계당국에 동국의 국내법상에 규정된 시한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5. 제12조에 관하여

제12조 3항에 관하여 나용선계약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대여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되는 지급금은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한 지급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6. 제12조에 관하여

제12조 3항에 관하여 과학적, 지질학적 또는 기술적 성격의 연구나 조사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되는 지급금은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지급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7. 제17조에 관하여

네덜란드법인의 "베스투르더 또는 콤미싸리스"는 그 법인의 주주총회에 의하여 임명되고 그 법인의 전반적인 관리와 감독책임을 맡은 사람을 각각 의미한다.

8. 제20조에 관하여

제20조 1항의 규정은 한국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진흥공사 및 정부적인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소유기구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

금이나 보수에 대하여도 또한 적용된다. 다만, 그와 같은 연금이나 보수가 네덜란드에서 영위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네덜란드에서 제공되는 용역에 관련되어 지급되지 않아야 한다.

9. 제20조에 관하여

제20조 1항의 규정이 네덜란드가 협약의 제23조 1항, 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음을 양해한다.

10. 제23조에 관하여

본 협약의 발효 후 10년 이후에 관계당국은 본 협약의 제23조 4항, 5항의 규정을 수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호협의를 한다.

11. 제23조에 관하여

네덜란드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관한 제23조 1항에서 의미하는 과세표준은 네덜란드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용어상의 총소득 또는 이윤임을 양해한다.

12. 제26조에 관하여

정보를 교환할 의무에는 은행이나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로부터 취득되는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와 유사한 기구”라 함은 그 중에도 보험회사를 의미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히 위임받은 양국의 대표가 본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78년 10월 25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네덜란드정부를 위하여

## 라. 개정 의정서

1978년 10월 25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네덜란드왕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개정 의정서

1999. 4. 22 외교통상부고시 제1999-362호

대한민국과 네덜란드왕국(이하 “체약국”이라 한다)은 1978년 10월 25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네덜란드왕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개정하기 위한 의정서를 체결하기를 희망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 제1조

1. 협약 제23조 제4항과 제5항은 2004년 1월 1일까지 유효하다. 따라서, 제23조는 2003년 12월 31일 이후 제4항과 제5항을 삭제하고 제6항을 제4항으로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제23조 제4항과 제5항은 2003년 12월 31일 이후 지급되거나 또는 지급일에 관계없이 그 날 이후의 기간과 관련있는 배당·이자 또는 사용료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3조 제4항과 제5항은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 또는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나 재산이 제23조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을 주로 이용할 목적으로 획득되거나, 합의되거나, 양도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더구나 제23조 제4항과 제5항은 오직 한국의 경제개발계획을 목적으로 그 계획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부에 관하여 지급되는 이자 및 계약에 관하여 지급된 사용료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 제2조

협약 의정서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1조와 제12조를 각각 제10조와 제11조로 한다.



## 제3조

이 의정서는 서면으로 체결국이 헌법상 필요한 절차를 충족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한날들 중 나중의 날 이후 15일째 되는 날에 발효하고, 이 의정서가 발효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 사안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되어야 할 배당·이자 또는 사용료의 금액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다.

## 제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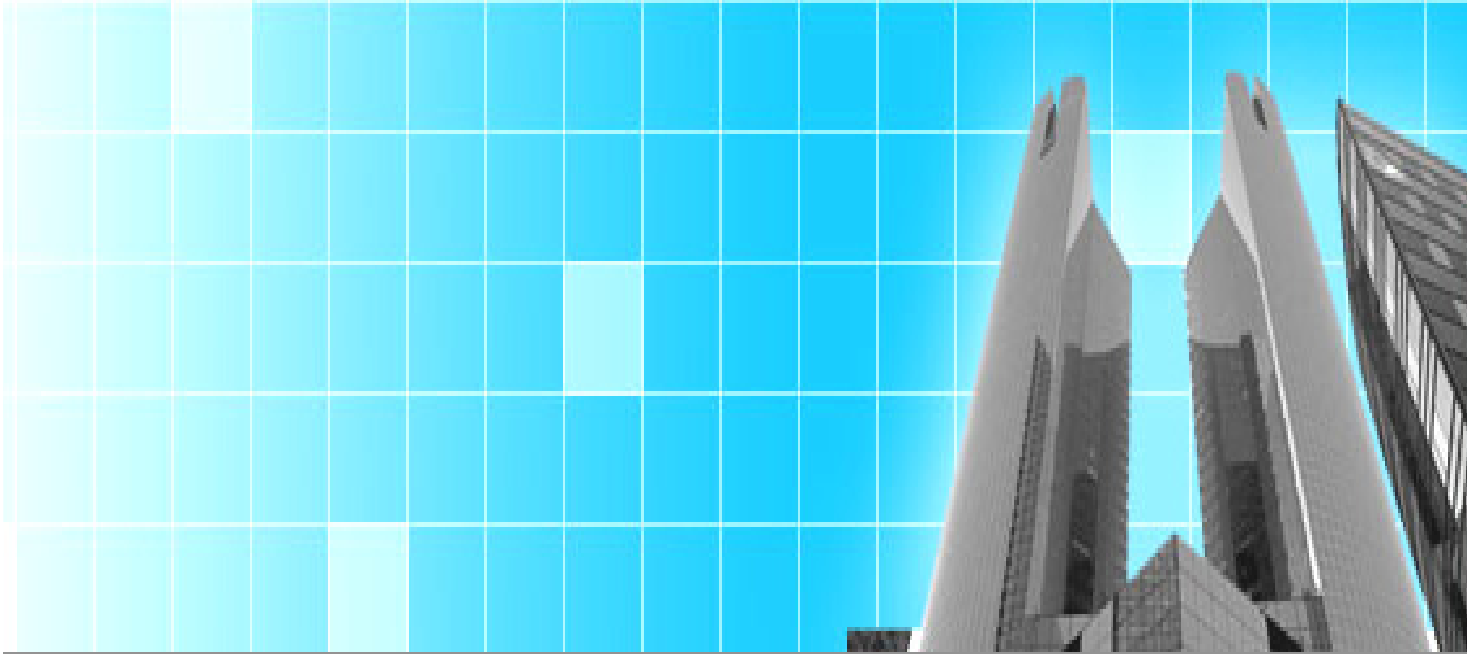
이 의정서는 협약의 제30조에 따라 협약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과 같은 시기에 효력이 정지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98년 11월 6일 헤이그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네덜란드왕국을 위하여





## *VIII.* 유관기관 연락처



## VII. 유관기관 연락처



- 주한 네덜란드대사관
  - 주 소: 서울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교보빌딩 14층 (110-714)
  - 전화번호: +82-2-737-9514 (팩스: +82-2-735-1321)
  - 홈페이지: <http://southkorea.nlembassy.org>
  
- 주네덜란드 한국대사관
  - 주 소: Verlengde Tolweg 8, 2517 JV The Hague, Netherlands
  - 전화번호: +31-70-358-6076 (팩스: +31-70-350-4712)
  - 홈페이지: <http://nld.mofat.go.kr>
  
- 네덜란드 국세청: Belastingdienst Amsterdam
  - 주 소: kingsfordweg 1, 1043 GN Amsterdam, The Netherlands
  - 전화번호: 0800-0543 (팩스: 31-(0)20-6877299)
  - 홈페이지: <http://www.belastingdienst.nl>
  
- 네덜란드 투자진흥청 본부(Netherlands Foreign Investment Agency - NFIA)
  - 주 소: Bezuidenhoutseweg 2, P.O.Box 20101, 2500 EC The Hague, The Netherlands

- 전화번호: +31-70-379-8818 (팩스: +31-70-379-6322)
- 홈페이지: <http://www.nfia.nl>
  
- 네덜란드 투자진흥청 서울사무소
  - 주 소: 서울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교보빌딩 14층 (110-714)
  - 전화번호: +82-2-732-1924 (팩스: +82-2-732-1925)
  - 홈페이지: <http://www.nfia-korea.com> (E-mail: [nfiako@chollian.net](mailto:nfiako@chollian.net))
  
- 네덜란드 상공회의소 연락처: Kamer van Koophandel Amsterdam (KVK Amsterdam)
  - 주 소: De Ruyterkade 5, 1013 AA Amsterdam, The Netherlands
  - 전화번호: 31-(0)20-5314000 (팩스: 31-(0)20-5314799)
  - 홈페이지: <http://www.kvk.nl>
  
- 네덜란드한인회 : <http://www.kr-nl.org>

---

본 책자는 우리 기업들이 네덜란드로 진출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네덜란드의 조세법 및 관련 법령을 2008.1.1 기준으로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 적용 등은 반드시 네덜란드 세법 및 조세조약의 관련 조문을 확인한 후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책자의 내용 중 오류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면 더욱 좋은 자료를 만드는데 활용하겠습니다.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전화번호 : (02)397-1423~1424

팩스번호 : (02)723-9976

---

**원고작성 및 편집**

|       |          |                        |
|-------|----------|------------------------|
| 국세청   | 국제협력담당관  | 송 성 권                  |
|       | 행정사무관    | 이 선 주                  |
|       | 세무조사관    | 김 현 국                  |
| 서울청   | 국제거래조사국  | 세무조사관 이 용 찬(2076-5673) |
| 인쇄처 : | (주)아트팰리스 | T.(02)2277-1088        |

---

본 책자를 복사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397-1423)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